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 정 공 시 편 람

2015. 7



목 차

| I.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 1 |
|---|
| Ⅱ. 2015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2 |
| 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7 |
| Ⅳ.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11 |
| ♡. 재정공시 사후관리12 |
| VI. 추진일정 ···································· |
| Ⅷ. 지방재정공시 작성기준15 |
| ① 공통공시(결산)의 내용별 작성기준 17 |
| ② 특수공시의 항목선정과 작성기준 93 |
| ③ 공통공시(예산)의 내용별 작성기준 94 |
| 별첨 1. 자치단체별 인구수(2014년 12월말 기준) ······ 108 |
|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2014년 기준)11 |
| 참고자료 1.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115 |
| 참고자료 2. 용어 해설 127 |
| 참고자료 3. 지방재정공시 표준화면 가이드 159 |
| 참고자료 4. 지방재정공시 우수사례('14년도, 경북도청) 169 |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 개념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② 제도 도입 추진경과

- '94년부터「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 '06년부터「지방재정 공시제도」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Ⅱ 2015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① 주민접근성 제고

- 지역주민의 공시 접근성 제고
 - 지역주민이 찾기 쉽고, 알기 쉽도록 표준화면 가이드 개선
 - 홈페이지 초기화면 배너, 공시 접근경로 및 공시메뉴 위치, 공시 화면 구성, 예·결산공시 구분 방법 등 우수사례를 예로 들어 표준안 개선·제시
- 재정 전문용어 및 지표값 의미 설명 등 공시항목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 정비

② 공시항목 확대 및 조정

- 공시항목 추가·시범운영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추가
 - 자치단체 모든 수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고에서 제공받는 협력사업비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추가
 - 자치단체별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의 척도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추가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공시항목 확대 및 시범반영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따라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보조금관련 현황, 출자·출연기관 현황, 성인지결산 등 항목 확대 및 시범 반영

- '14회계연도 결산공시(46개 → 54개)

| 분류기준 | 결산공시 추가항목 |
|------|--|
| 확대 | 통합부채 현황(시범)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우발부채현황(시범)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출자·출연기관현황(시범) ・성인지결산(시범)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 조정 | 민간이전보조금 → 지방보조금 현황(시범) 지자체 채무 → ①지자체 채무, ②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재정력지수 → 삭제 |

- ※ 시범항목은 2015회계연도부터 정식항목으로 공시
- '16회계연도 예산공시(8개 → 13개)

| 분류기준 | 예산공시 추가항목 |
|------|---|
| 확대 | 지역통합재정통계 성과계획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 공시항목 중복성 검토 및 분류정비

- 공시항목과 시기가 확대됨에 따라, 이미 공개중인 항목과의 중복성 검토 및 공시시기에 따른 분류체계 정비

🚯 통합공시 활성화

- 통합공시(재정고) 항목확대 및 분류개선
- 통합공시 항목 확대(예산 3개→8개, 결산 18개→31개)
 - 공시항목 중 지자체간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추가 발굴하여 통합공시 항목으로 확대*
 - * 중기지방재정계획, 복식부기 재무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등
 - 재정고에 공시한 통합공시를 수요자 관점에서 가독성, 직관성을 검토하여 분류체계 마련 및 화면 재구성

| 분류기준 | 통합공시 추가 항목 |
|-----------------|---|
| 결산 (*15.10.) | • (살림규모) 세입결산, 세출결산 • (채무/부채) 민자사업재정부담 총액, 보증채무 비율 • (채권) 채권총액 •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기본경비 집행내역,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누계액, 맞춤형복지비비율, • (기금, 지방공공기관 등) 기금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총액 • (재정성과) 복식부기 재무현황, 수의계약 비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 예산 ('16.4.) | •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 (재정운용계획)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참고) 2015년도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기본편제**('15.8월)**

| 분류 | 재정공시(54개) | 통합공시(31개) |
|-----------------|---|--|
| 살림규모 | 세입결산세출결산중기지방재정계획 | 세입결산세출결산 |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주도[최종] 통합재정수지[최종] | 재정자립도[최종]재정자주도[최종]통합재정수지비율[최종] |
| 부채/채무 | 통합부채 현황(시범) 지자체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우발부채 현황(시범)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일시차입금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보증채무 현황 | 예산대비채무비율 지자체부채비율 지방공기업부채비율 민자사업재정부담 총액 보중채무 비율 |
| 채 권 | • 채권 현황 | • 채권총액 |
| 행정운영경비 |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 공무원인건비비율 • 업무추진비비율 • 지방의회경비비율 • 맞춤형복지비비율 • 연말지출비율 • 연말지출비율 • 기관운영기본경비 집행내역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누계액 |
| 복지·민간 지원경비 | 사회복지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시범) 행사 · 축제경비 | 사회복지비율 민간이전보조금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
| 기금, 지방공공 관 등 | 기금 기금성과분석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출연기관현황(시범) 지방공기업 현황 | 출자·출연금비율 기금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총액 |
| 재정성과 | 복식부기 재무제표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세 지출현황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주민참여 예산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수의계약 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 복식부기 재무현황 • 수의계약비율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 감사 및 평가결과 | •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현황 |
|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 |
| 특수공시 |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5건 이상) | |

▶굵은 글씨는 신규 및 시범 추가된 공시항목

2016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기본편제(*16.2월) (참고)

| 분류 | 재정공시(13개) | 통합공시(8개) | | |
|---------|--|--|--|--|
| 예산규모 |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 | |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주도[당초] 통합재정수지[당초] |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주도[당초] 통합재정수지[당초] | | |
| 재정운용 계획 |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성과계획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 |

[▶]굵은 글씨는 신규추가된 공시항목

Ⅲ /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 🕦 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 ②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등 10개 분야 54개 세부항목

•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은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 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14회계연도 공통공시 범위는 종전 기준을 준용하되, 개정된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일부항목을 시범운영으로 포함

-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특수공시의 대상

-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특수공시사항 예시

-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
-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
-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
-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
-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 현안사업 추진실적 등
-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 : 별첨서식 참조

③ 공시의 시기 및 작성: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에 총 2회 실시

■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4 공시방법

-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 ※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하며, 기타다른 방법에 의한 재정공시 자료도 최소 1년 이상 보관
 - ※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

⑤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구입·보급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원전폐기물 수거시설을 우리지역에 유치
 - △△지역 도로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
 - △△정부정책에 원천적으로 반대
-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현재 사업계획 상태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이 정하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Ⅳ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제3항
- 자치단체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
-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 초과 불가
 - 민간위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
 - 공 무 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
- 기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위원회의 기능

-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의
-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 절차 등 준수여부에 대한 심의
- 기타 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Ⅴ / 재정공시 사후관리

- 재정공시 결과 보고서 제출
 - 재정공시 후 5일 이내에 공시내용, 공시일시, 공시방법, 위원회 운영실적 등 재정공시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에 보고
 - 행정자치부 보고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문서보고(공문시달), 지방의회 보고는 이를 참조하여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
- 불성실 재정공시 자치단체에 대한 조치
 -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결과가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당 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지방재정법 제60조의2)
 - 재공시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 행정자치부가 직접 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 행정자치부 통합공시
 - 자치단체별 공시 결과를 종합, 행자부 재정고(재정포털사이트)에 항목별·자치단체별 비교하여 통합공시
 -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공시 항목 비교가 가능토록 분류체계 마련 및 통합공시 화면 재구성

VI 추진일정

지침(기본계획) 시달(7월)

: 행정자치부

- '15 재정공시 편람(추진계획) 통보(6월)
- '15 재정공시 추진계획 및 프로그램 설명 등을 위한 교육(7월)

결산재정공시 내용 작성(7~8월)

: 모든 자치단체

- 재정공시 추진계획에 따라 공통공시 내용 작성
-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주민관심사항 등 특수공시 내용 발굴 및 작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자치단체별 결산기준 재정공시(8월말) : 모든 자치단체

- 자치단체별 재정공시(결산기준) 내용 공시(홈페이지, 소식지 등)
- 재정공시 결과 보고(재정공시 후 5일 이내)

재정공시 사후관리(9~11월)

: 행정자치부

- 자치단체별 재정공시(결산기준) 결과 종합
- 지방재정 포털(재정고) 등을 활용한 통합공시
- 자치단체 재정공시결과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

예산재정공시 내용 작성(익년 1~2월)

: 모든 자치단체

• 재정공시 추진계획에 따라 공통공시 내용 작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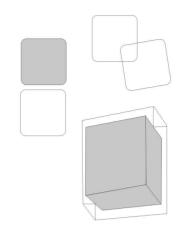
자치단체별 예산기준 재정공시(익년 2월말) : 모든 자치단체

- 자치단체별 재정공시(예산기준) 내용 공시(홈페이지, 소식지 등)
- 재정공시 결과 보고(재정공시 후 5일 이내)

재정공시 사후관리(익년 3~4월)

: 행정자치부

- 자치단체별 재정공시(예산기준) 결과 종합
- 지방재정 포털(재정고) 등을 활용한 통합공시



Ⅷ. 지방재정공시 작성기준

4

| 제1절 공통공시(결산)의 내용별 작성기준 | 17 |
|--|-----|
| 1. 공통공시 총괄 | 19 |
| 2. 살림규모 | 21 |
| 3. 재정여건 | 27 |
| 4. 채무 및 부채 | 30 |
| 5. 채권 | 46 |
| 6. 행정운영경비 | 47 |
| 7. 복지 및 민간지원 | 59 |
|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 | 63 |
| 9. 재정성과 | 70 |
| 10. 감사 및 평가결과 | 86 |
|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 87 |
| 제2절 특수공시의 항목선정과 작성기준 | 93 |
| 제3절 공통공시(예산)의 내용별 작성기준 | 94 |
| 1. 공통공시 총괄 | 95 |
| 2. 예산규모 | 96 |
| 3. 재정여건 1 | 100 |
| 4 재젓은용계획 1 | 103 |

제1절 공통공시(결산)의 내용별 작성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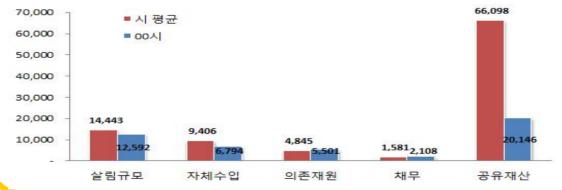
2015년 ○○○(자치단체명) 재정공시(결산)

2015. 8.

○○시장(도지사)(인)

- ◆ 우리 시(도)의 2014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억원으로, 전년대비 억원이 증가(감소)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만원입니다.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억워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억원입니다.
- ◆ 2014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도)의 채무는 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4년도에 ○○외 건(억원)을 취득하고, ○○외 건(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억원 규모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 ◆ 우리 시(도)를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동종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동종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단위: 억원)



- ◈ 우리 시(도)의 2014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억원) 보다 억원이 많(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억원)보다 억원이 많(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억원)보다 억원 많(적)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억원)보다 억원 많(적)고, 시(도)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천원) 보다 천원 많(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억원)과 비교하여 억원이 많(적)습니다.
- ◈ 우리 시(도)의 '14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이며(전국 평균 %),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 (전국 평균 %)입니다.
- ◈ 우리 시(도)의 2014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억원의 흑자(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도)의 재정은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홍길동(전화번호)

🕕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 재정운영 결과 | | ○○광역시 | | | 동종 자치단체 평균 | | |
|----------|---|-------|---|---------|------------|-------|---------|
| | | ′14년도 | ′13년도 | 중감 | ′14년도 | ′13년도 | 중감 |
| | | (A) | (B) | (C=A-B) | (A) | (B) | (C=A-B) |
| ① 공 | 통공시 | | | | - | | |
| | 세 입 결 산 | | | | | | |
| ② 살림규모 | 세 출 결 산 | | | | | | |
| | 중기지방재정계획 | 항목별 공 | ·시내용 참 | 조 | | | |
| | 재정자립도[최종] | | | | | | |
| ③ 재정여건 | 재정자주도[최종] | | | | | | |
| | 통합재정수지[최종] | | | | | | |
| | 통합부채현황 | 항목별 공 | }시내용 참 □ | 조 | | | |
| | 지자체 부채 현황 | | | | | | |
| | 지 방 공 기 업 부 채 현 황 | | | | | | |
| | 부 채 현 황 출자·출연기관 부 채 현 황 | | ?시내용 참 | | | | |
| | 우발부채 현황 | 항목별 공 | 거내용 참 | 조 | | | |
| ④ 채무/부채 | 지자체 채무 현황 | | | | | | |
|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 행 액 | 항목별 공 | · 상시내용 참 | 조 | | | |
| |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
| | 민 자 사 업 재정부담 현황 | | | | | | |
| |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 획·이 행 현 황 | 항목별 공 | 강시내용 참 | 조 | | | |
| | 보증채무 현황 | | | | | | |
| ⑤ 채 권 | 채 권 현 황 | | | | | | |
| | 기본경비 집행현황 | | | | | | |
| | 자 치 단 체 청 사 관 리 운 영 | 항목별 공 | · 상시내용 참 | 조 | | | |
| | 인건비 집행현황 | | | | | | |
|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 | | | | |
| | 국외여비 집행현황 | 항목별 공 | · 강시내용 참 | 조 | | | |
| ⑥ 행정운영경비 | 지방의회경비집 행현황 | | | | | | |
|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 핸 현 황 | 항목별 공 | 3시내용 참 | 조 | | | |
| | 맞춤형 복지비 현황 | | | | | | |
| | 연 말 지 출 비 율 | | | | | | |
| | 지방세·세외수입 체 납 현 황 | | | | | | |
| | 금고 협력사업비 운 영 현 황 | 항목별 공 | · · · · · · · · · · · · · · · · · · · | 조 | | 1 | 1 |

| | | | 000 | | | 자치단체 | 평균 |
|-------------------|--------------------------|--------------|---------------|---------------|--------------|--------------|---------------|
| 재정운 | 영 결과 | '14년도 (A) | '13년도 (B) | 증감 (C=A-B) | ′14년도 (A) | '13년도 (B) | 증감 (C=A-B) |
| | 사 회 복 지 비 | | | | | | |
| ⑦ 복지·민간지원 경비 |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 | | | | | |
| 0 1 | 행사축제경비 | | | | | | |
| | 기 금 | | | | | | |
| | 기금성과분석결과 | 항목별 공 | 공시내용 참 | ·조 | | | |
| | 공유재산 현재액 | | | | | | |
| ⑧ 기금, 지방 | 물품 현재액 | | | | | | |
| 공기업 등 | 출 자 · 출 연 금 집 행 현 황 | | | | | | |
| | 출자·출연기관 현 황 | | 공시내용 참 | | | | |
| | 지방공기업 현황 | 항목별 공 | 공시내용 참 | ·조 | | | |
| | 재 자산총계 | | | | | | |
| | 무 <u>부채총계</u> 제 수익총계 | | | | | | |
| | 표 비용총계 | | | | | | |
| | 재 정 분 석 | 2) T W = | 7 1)-1) () =) | _ | | | |
| | 결 과 | 앙독멸 경 | 공시내용 참 | ·소 | | | |
| |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 행 현 황 | 항목별 공 | 공시내용 참 | ·조 | | | |
| | 지방세 지출현황 | | | | | | |
| ⑨ 재정성과 | 성인지예산현황 | 항목별 공 | 공시내용 참 | ·조 | | | |
| | 성인지결산현황 | 항목별 공 | 당시내용 참 | ·조 | | | |
| | 주민참여예산현황 | 항목별 공 | 공시내용 참 | ·조 | | | |
| | 행 사 · 축 제 원 가 회 계 정 보 | 항목별 공 | 당시내용 참 | ·조 | | | |
| | 청 사 신 축 원 가 회 계 정 보 | 항목별 공 | 공시내용 참 | ·조 | | | |
| | 수 의 계 약 현 황 | | | | | | |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 영 현 황 | 항목별 공 | · 당시내용 참 | ·조 | | | |
| | 외부감사결과 | 항목별 공 | 공시내용 참 | ·조 | | | |
| ⑩ 감사(평가)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항목별 공 | 공시내용 참 | ·조 | | | |
| | 투융자심사대상사업 | 항목별 공 | 공시내용 참 | ·조 | | | |
| ①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지 방 채 발 행 사 업 | 항목별 공 | · 당시내용 참 | ·조 | | | |
| | 민 간 투 자 사 업 | 항목별 공 | 공시내용 참 | ·조 | | | |

- ▶동종단체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
-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 동종단체 평균액은 자치단체 자료입력 완료 후 중앙에서 산출하여 e호조를 통해 제공

🕗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 1년 동안 우리 ○○○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세입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 | | | | |
| | | | | |

- ▶ 결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백만원)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 | | | |
| | | | | |
| | | | | |

- ▶ 결산 총계기준
- ☞ 연평균 증가율 등을 이용하여 2010년~2014년 세입규모 변화 등 설명

❖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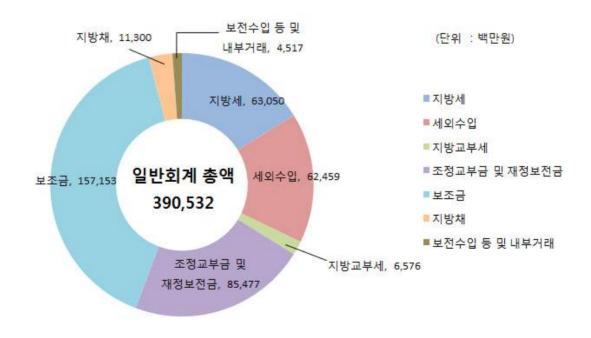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 연 도 | 2010 |) | 2011 | L | 2012 | 2 | 2013 | 3 | 2014 | Į. |
|---------------|------|----|------|----|------|----|------|----|------|----|
| 세입재원별 | 금액 | 비중 |
| 합 계 | | | | | | | | | | |
| 지 방 세 | | |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 | | | |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입재원별 비중이나 규모의 변화, 연도별 증감폭이 클 경우 사유(지역경제, 부동산시장, 취득세 감면, 징세노력 등)를 설명

세입재원별 현황('14년, 일반회계)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지방세 결산액 | | | | | |
| 인구수(명) | | | | | |
|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 | | | | |

2-2. 세출결산

■ 1년 동안 우리 ○○○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백만원)

| 세출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 | | | | |
| | | | | |

- ▶ 결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백만원)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 | | | |
| | | | | |

- ▶ 결산 총계기준
- ☞ 연평균 증가율 등을 이용하여 2010년~2014년 세출규모 변화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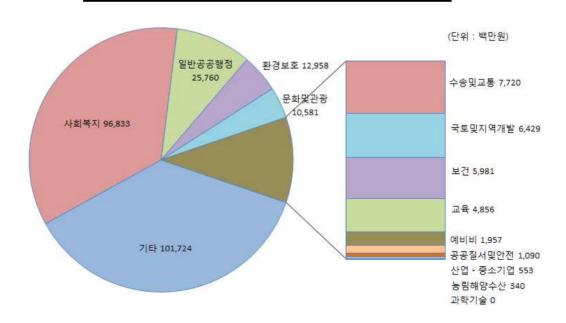
❖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 | 연도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 2014 | |
|------|-------|------|----|------|----|------|----|------|----|------|----|
| 분야별 | | 금액 | 비중 |
| 합 | 계 | | | | | | | | | | |
| 일반공 | ·공행정 | | | | | | | | | | |
| 공공질/ | 서·안전 | | | | | | | | | | |
| 교 | 슉 | | | | | | | | | | |
| 문화 5 | 및 관광 | | | | | | | | | | |
| 환 경 | 보 호 | | | | | | | | | | |
| 사 회 | 복 지 | | | | | | | | | | |
| 보 | 건 | | | | | | | | | | |
| 농림해 | 양수산 | | | | | | | | | | |
| 산업·중 | 소기업 | | | | | | | | | | |
| 수송 5 | 및 교통 | | | | | | | | | | |
| 국토・ス |]역개발 | | | | | | | | | | |
| 과 학 | 기 술 | | | | | | | | | | |
| 예 날 | a) b) | | | | | | | | | | |
| 기 | 타 | | | | | | | | | | |

-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 세출분야별 결산액과 비중 변화 등 설명

분야별 세출규모('14년,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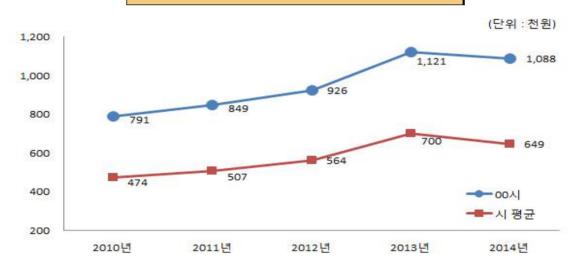


❖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천원, 명)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세출결산액(일반회계) | | | | | |
| 인구수(명) | | | | | |
| 주민 1인당 세출액 | | | | | |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계 | 연평균 증가율 |
|---|------------------|------|------|------|------|------|----|------------|
| 1 |) 세 입 | | | | | | | |
| | 자 체 수 입 | | | | | | | |
| | 의 존 수 입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 |
| 2 |) 세 출 | | | | | | | |
| | 경 상 지 출 | | | | | | | |
| | 사 업 수 요 | | | | | |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1))-1] × 100

③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 ○○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백만원, %)

| 재정자립도 (B <i>J</i> A) | 세입 합계 (A=B+C+D+E) | 자체세입 (B) | 의존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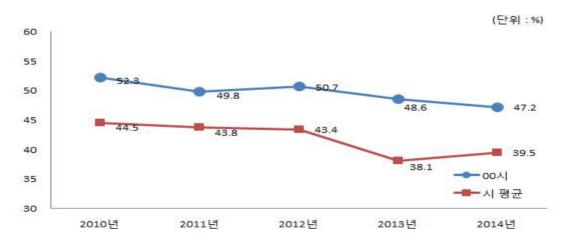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 구 분 | 연도별 (%) | | | | | | |
|------|---------|------|------|------|------|--|--|
| ा च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 최종예산 | | | | | | |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와 동종단체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체세입과 의존재원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을 감안)를 설명

3-2. 재정자주도[최종]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4년도 우리 ○○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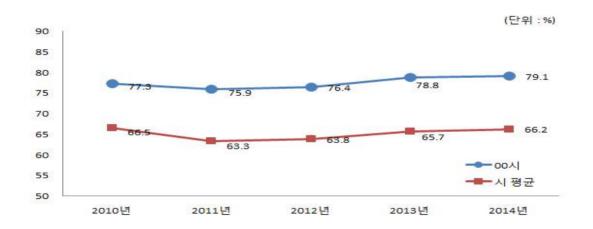
| 재정자주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주재원 (B) | 보조금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 구 분 | 연도별 (%) | | | | | |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최종예산 | | | | | |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와 증감 폭이 큰 연도는 사유 및 동종 자치단체 평균과 비교 해서 재정자주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주재원과 보조금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을 감안)를 설명

3-3. 통합재정수지[최종]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 재정수지입니다.

(단위: 백만원)

| 회계별 | | 통계 규모 | | | | | 통합재정 통합재정 통합지 그 교 스키 1 수지 | | |
|-------------|-----------|-----------|-----------------|-----------------|----------------|-------------------|------------------------------|---------------------------|-------------------------|
| | 세입 (A) | 지출 (B) | 융자 회수 (C) | 융자 지출 (D) | 순융자 (E=D-C) | 순세계 잉여금 (F) | 규모 (G=B+E) | 통합재정 수지 1 H=A-(B+E) | 수지 2 I=A-(B+E) +F |
| 총계 | |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
| 기타 특별회계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 연도별 비교 | | | | | |
|----------|------|--------|------|------|------|--|--|
| 7 E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 통합재정수지1 | | | | | | | |
| 통합재정수지 2 | | | | | | | |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흑자)인 사유,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시범)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13년 | 2014년 | 증감 |
|------|---------|-------|-------|----|
| 통 | 합자산 | | | |
| 통합부채 | | | | |
| | 유동부채 | | | |
| | 장기차입부채 | |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 ▶ '14년 결산 순계기준
- ▶ 우리 OO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OO개로 공사·공단 OO개, 출자·출연 기관 OO개를 포함하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3년 | 2014년 | 중 감 | 비고 |
|-----------------------|-------|-------|-----|----|
| 자산(A) | | | | |
| 부채(B) | | | | |
|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 | | | |

-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 2013,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우리 ○○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 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 | 2013년 | | | 2014년 | |
|----|---------|-------|-------|-------------------------------|-------|-------|------------------------------|
| ä | 구 분 | 자산(A) | 부채(B) |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 자산(A) | 부채(B) |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
| ŏ | 합 계 | | | (2)(212) | | | (5)(12) 100 |
| | 소 계 | | | | | | |
| | 상수도 | | | | | | |
| 직영 | 하수도 | | | | | | |
| 기업 | 공영개발사업 | | | | | | |
| | 지역개발기금 | | | | | | |
| | X | | | | | | |
| | 소 계 | | | | | | |
| 공사 | 도시개발공사 | | | | | | |
| 공단 | 도시철도공사 | | | | | | |
| | ĭ | | | | | | |

※ 2013년, 2014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사유 등 기술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 | | 204213 | | | 204 41 3 | |
|----|---|-----|--------|--------|----------------|--------|----------|----------------------------------|
| | | | | 2013년 | | | 2014년 | |
| _ | 7 | 분 | | | 자본대비 | | | 자본대비 |
| | Г | ਦ | 자산(A) | 부채(B) | 부채비율 | 자산(A) | 부채(B) | 부채비율 |
| | | | , =(=) | , "(-) | (B/(A-B)×100 | , =(-) | ' "(-) | (B/(A-B)×100 |
| | | | | | (0)(11-0)**100 | | | (<i>D</i>)(11- <i>D</i>)··100 |
| 1 | 합 | 계 | | | | | | |
| | 2 | 소 계 | | | | | | |
| | | ĭ | | | | | | |
| 출자 | | | | | | | | |
| 기관 | | | | | | | | |
| | | | | 자료없음 | | | | |
| | | ĭ | | | | | | |
| | 2 | 소 계 | | | | | | |
| 출연 | | | | | | | | |
| 기관 | | | | | | | | |
| | | ĭ | | | | | | |

- ▶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습니다.
- ※ 2014년 현황만 중앙배포될 예정이며, 2013년 현황은 출자·출연기관 담당자 판단하에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 ☞ 부채비율이 높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사유 및 부채발생원인 등 기술

4-5. 우발부채 현황(시범)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3년 | 2014년 | 증감 |
|----------|------------------------------|-------|-------|----|
| | 계 | | | |
| 지· | 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채. | 무부담행위 | | | |
| ВТ | 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재매입약정 | | | |
| 계 | 매입확약 | | | |
| 약 삿 | 손실부담계약 | | | |
| 계약상약정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정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소 | 송관련 | |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Ξ | 구 분 | 발생연도 | 행위명 | 제공 받은자 | 보증 채무액 | 부채 계상액 | 채권자 | 제공사유 |
|-------------------|------------------|------|-----|-----------|-----------|-----------|-----|------|
| | 계 | | | | | | | |
| | ○시(도) | | | | | | | |
| | ○/1(<u>1</u> -) | | | | | | | |
| 지 방 공사· 공 단 | ○○공단 | | | | | | | |
| 공 단 | : | | | | | | | |
| 출 자 · 출연기관 | ○○기관 | | | | | | | |
| 출연기관 | | | | | | | | |
| (내 | (내부거래) | | | | | | | |

※ '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ī | 1 분 | 발생연도 | 행위명 | 내용 | 채무부담 행위금액 | 피제공자 | 부채 계상액 |
|-------------------|--------|------|-----|----|--------------|------|-----------|
| | 계 | | | | | | |
| | ○ 시(도) | | | | | | |
| | ○시(도) | | | | | | |
| 지 방 공사· 공 단 | ○○공단 | | | | | | |
| 공 단 | : | | | | | | |
| 출 자 · 출연기관 | ○○기관 | | | | | | |
| 출연기관 | i | | | | | | |
| (내 | (내부거래) | | | | | | |

^{※ &#}x27;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백만원)

| ī | 그 분 | 사업명 | 운영권자 | 李阳 | 계약기간 | 재정지원 협약내역 | 중도해지 환급금 내역 | 향후 부담 추정액 |
|-------------------|------|-----|------|----|------|--------------|-------------------|--------------|
| | 계 | | | | | | | |
| ㅇㅇ시(도) | | | | | | | | |
| 지방 | ○○공단 | | | | | | | |
| 지 방 공사· 공 단 | : | | | | | | | |
| 출 자 · 출연기관 | ○○기관 | | | | | | | |
| 출연기관 | | | | | | | | |
| (내부거래) | | | | | | | | |

^{※ &#}x27;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 ī | 그 분 | 약정유형 | 행위명 | 사업자 | 약정 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 부채 계상액 | 사업 기간 | 약정 내용 |
|-------------------|----------|------|-----|-----|---------------------------|-----------|----------|----------|
| | 계 | | | | | | | |
| 0 | O O 시(도) | | | | | | | |
| 지방 | ○○공단 | | | | | | | |
| 지 방 공사· 공 단 | 1 | | | | | | | |
| 출 자· 출연기관 | ○○기관 | | | | | | | |
| | | | | | | | | |
| (나 | 부거래) | | | | | | | |

^{※ &#}x27;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 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 ′13년도 | | 증 감 액 | | ′14년도 |
|-------|-------|------|------------|--------------|------------|------------|----------------|
| | 구 | 분 | 현재액 (A) | 계 (B=C-D) | 발생액 (C) | 소멸액 (D) | 현재액 E=(A+B) |
| 7 | 합 | 계 | | | | | (원금기준) |
| | 일 반 회 | 계 | | | | | |
| 특 | 소 | 계 | | | | | |
| 별 | 공기업특 | 투별회계 | | | | | |
| 회 | 00특 | 별회계 | | | | | |
| 계 | △△특 | 별회계 | | | | | |
| , | 기 금 회 | 계 | | | | | |

[※] 지방채무는 2014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전년도와 비교해서 회계별 발생액과, 소멸액, 2014년말 현재액을 기술

^{※ &#}x27;14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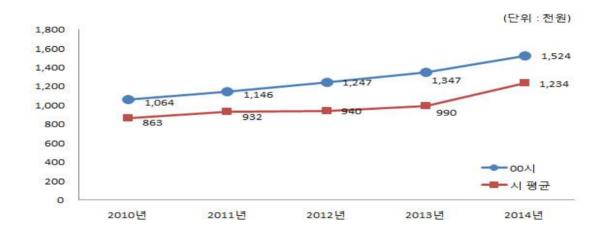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 | 연 도 별 | | | | | | |
|--------------|------|-------|------|------|------|--|--|--|
| ੀ ਦ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
| 채무현황 | | | | | | | | |
| 인구수 | | | | | | | | |
| 주민 1인당채무(천원) | | | | | | | | |

-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증감폭이 큰 연도 및 동종단체와 비교해서 1인당 채무액이 많은(적은) 사유를 설명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백만원, %)

| 7. 13 | 연 도 별 | | | | | | |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 | | | | | |
| 발행액(B) | | | |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 한도액 초과 발행시 등 내용 설명

4-8.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분 | | 증 감 액 | |
|--------|---------|------------|--------------|---------|---------|
| | 구 분 | | 계 (A=B-C) | 발생액 (B) | 소멸액 (C) |
| | 합 계 | | | | |
| | 일 반 회 계 | | | | |
| E | 소 계 |] | | | |
| 특 별 | 공기업특별. | 회계 | | | |
| 회 계 | ○○특별호 | 희 계 | | | |
| /1 | △△특별호 | 희 계 | | | |
| | 기금회계 | | | | |

[☞] 일시차입금 발생 및 소멸 내역을 설명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가 민자 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2013년 | 2014년 | 중 감 | 비고 |
|-----------|-------|-------|-----|----|
| 합 계 | | | | |
| BTL 임대료 및 | | | | |
| 운영비 | | | | |
| BTO 재정지원금 | | | |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3, 2014}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 구 분 | 사업명 | 총사업비 | 계약기간 | | 재정부 | 부담액 | | н) — |
|--------|---------|------|------|----|-----|-----|------|------|
| 正 | | | | 소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비고 |
| 합계 | | | | | | | | |
| | ◇◇◇◇ 사업 | | | | | | | |
| BTL 사업 | ◇◇◇◇ 사업 | | | | | | | |
| | X | | | | | | | |
| | ◇◇◇◇ 사업 | | | | | | | |
| BTO 사업 | ◇◇◇◇ 사업 | | | | | | | |
| | ĭ | | | | | | | |

☞ 사업별로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내용을 설명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 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 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 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계획수립 및 이행현황 확정 시 별도 수시공시('15.○○.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시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zlı i 는 pl | 당하 | 내연도 중 | 감액 | | 디레서드미 | |
|------------------|---------|------------|------------|------------|-----|--|-------|--|
| | 회 계 | 전년도말 현재액 | 계 (A-B) | 발생액 (A) | 저기이 | | 비고 | |
| | 합 계 |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특 | 소 계 | | | | | | | |
| 특별 회 계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계 | ○○특별회계 | | | | | | | |
| 7] | 소 계 | | | | | | | |
| 기 금 회 계 | △△△기금 | | | | | | | |
| 계 | 000기금 | | | | | | | |

※ '14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 , | | 연 도 별 | | | | | | |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
| 세출결산액 | | | | | | | | |
| 보증채무현재액 | | | | | | | | |
| 비율 | | | | | | | | |

☞ 연도별 증감내역 설명

❖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 구분 | रो ले त्त्वे | | 채권자 | | | | |
|----|--------------|------|------|-----|------|-----|-----|
| 十七 | 사업명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채무자 | 상환기간 | 현재액 | 세천사 |
| 계 |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산서 부속서류 (제14호 서식) 참고

[5] 채권

5-1. 채권 현황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 '13년도 현재액 | | 중 감 액 | | ′14년도 |
|-------------|---------|----|--------------|--------------|--------|--------|-----------------------|
| | 구 분 | | 현재액 (A) | 계 (B=C-D) | 발생액(C) | 소멸액(D) | '14년도 현재액 (A+B) |
| | 합 계 | | | | | | (원금기준) |
| | 일 반 회 계 | | | | | | |
| 특 | 소 계 | | | | | | |
| 별 | 공기업특별: | 회계 | | | | | |
| 투별회 계 | ○○특별호 | 1계 | | | | | |
| 기 | 소 계 | | | | | | |
| 그 | △△△フ]・ | 금 | | | | | |
| 금 회 계 | 0007] | 글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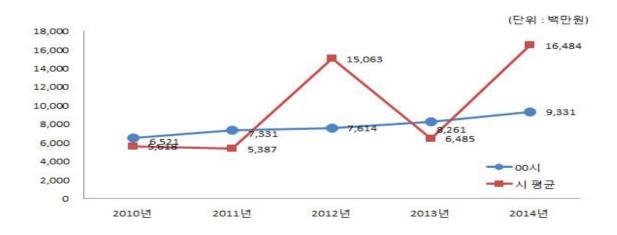
- ▶ '1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백만원)

| 그 ㅂ | | | 연 도 별 | | |
|------|------|------|-------|------|------|
| 丁 ゼ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채권현황 | | | | | |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세출결산액 (A) | 기본경비 (B) | 비율 (B/A) | 비고 |
|--------|--------------|-------------|-------------|----|
| 합 계 | | | | |
| 일반운영비 | | | | |
| 여 비 | | | | |
| 업무추진비 | | | | |
| 직무수행경비 | | | | |
| 자산취득비 | | |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 연 도 별 | | |
|-------|------|------|-------|------|------|
| ੀ ਦ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 | | | | |
| 기본경비 | | | | | |
| 비율 | | | | | |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 증감이 큰 연도는 사유를 설명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우리 ○○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m²이 적어(많아) 2015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m², 백만원)

| ○○시 공공청사 | ○○시 공공청사 | 보유면적과 |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
|----------|----------|----------|-------------|
| 보유 면적 | 적정 면적 | 적정면적의 차이 | |
| | | | |

-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 보유면적이 적정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필요시 사유 설명

6-3.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시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세출결산액 (A) | 인건비 (B) | 비율 (B/A) | 비고 |
|---------------|--------------|---------|----------|----|
| 합 계 | | | | |
| 인건비(101) | | | | |
| 직무수행경비(204) | | | | |
| 포상금(303) | | | | |
| 연금부담금 등 (304) | | | | |

-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 연 도 별 | | |
|------------|------|------|-------|------|------|
| 7 E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A) | | | | | |
| 인건비(B) | | | | | |
| 인건비비율(B/A) | | | | | |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세출결산액 (A) | 업무추진비 (B) | 비율 (B/A) | 비고 |
|-----------------------|-----------|-----------|----------|----|
| 합 계 | | |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 | |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 | |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 연도별 | | |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 | | | | |
| 업무추진비 | | | | | |
| 비율 | | | | | |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 주요 증감원인 설명

◈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 월 별 | 집 행 내 역 | 금 액 | 비고 |
|-----|----------------|-------|-----|
| | 총계 | | |
| 1월 | ○○건 소계 | | |
| | ○○사업추진 간담회 등 건 | 6,533 | |
| | ○○행사추진 간담회 | 1,240 | 단일건 |
| | : | : |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 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으로 기재하고 비고에 단일건 표시
 -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장기간 |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 출장지역 | 총 출장 인원(명) |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 비고 |
|------|--------------|------|---------------|----------------------|-----|
| | | | | | 단체장 |
| | | | |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시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명, %)

| 세출결산액 |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비율 | 지방의원 정수 | 1인당 의회경비 |
|-------|----------|----------------|---------|-----------|
| (A) | (B) | (B <i>J</i> A) | (C) | (B/C)(천원) |
| | | | | |

-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 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 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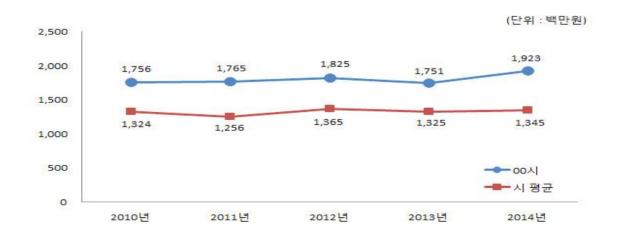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명, %)

| 구 분 | | | 연도별 | | |
|-------------------|------|------|------|------|------|
| 十 七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 | | | | |
| 의회경비 | | | | | |
| 의원 정수 | | | | | |
|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 | | | |
|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 | | | | |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국외여비 집행액 | 지방의원 정수(명)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
|----------|------------|-----------------|
| (A) | (B) | (A/B)(천원) |
| | | |

-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4.12.31일 기준(별첨)
- ☞ 국외여비 주요 집행액, 1인당 집행액 등을 설명
-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천원, 명)

| 출장기간 |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 출장지역 |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 국외여비 집행액 |
|------|--------------|------|------------------|----------|
| | | | 2(5) | |
| | | | | |

※ 2014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로서, 2014년 우리 ○○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대상인원 | 세 출 | 맞춤형 | 비율 | 1인당 평균배정액 |
|------|---------|---------|-------|-----------|
| (A) | 결산액 (B) | 복지비 (C) | (C/B) | (C/A)(천원) |
| | |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4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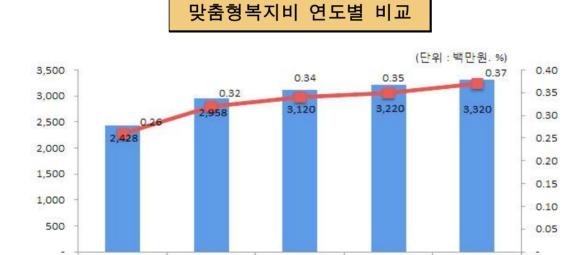
▶ 맞춤형복지비 : '14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œ. | 도 | 별 | |
|------------------------|------|------|------|------|------|
| 1 T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대상인원 (A) | | | | | |
| 세출결산액 (B) | | | | | |
| 맞춤형 복지비(C) | | | | | |
| 비율(C/B) | | | | | |
|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 | | | | |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등을 설명



2012년

2011년

── 맞춤형복지비 ◆──비율

2013년

2014년

☞ 맞춤형 복지비 증감원인 설명

2010년

6-9. 역말지출 비율

■ 우리 ○○시에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세출결산액 (A) |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 비율 (B/A) |
|------------------|-----------|----------------------------|----------|
| 계 | | | |
| 시설비 (401-01) | | | |
| 감리비 (401-02) | | | |
| 시설부대비 (401-03) | | | |
|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 '14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 (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 연도별 | | |
|----------------------------|------|------|------|------|------|
| । च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A) | | | | | |
|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 | | | | |
| 비율(B/A) | | | | |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2013연말 체납누계액(A) | 2014연말 체납누계액(B) | 증감액(B-A) |
|------|-----------------|-----------------|----------|
| 합 계 | | | |
| 지방세 | | | |
| 세외수입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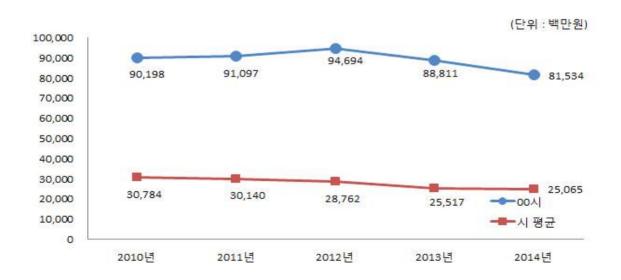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 주요 체납내역 및 징수전망 등 설명

❖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 | 연 도 별 |] | |
|----------------|------|------|-------|------|------|
| 了 正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합 계 | | | | | |
| 지방세 | | | | | |
| 세외수입 | | | | | |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연도별 증감, 동종단체 대비 많은(적은) 사유를 설명

6-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 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의 2014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 구 분 | 금고은행 | 약정기간 | 약정기간 총액 | 예산 편성액 | 실제 출연액 | 세입 처리액 |
|------|------|--------------------------|---------|---------------|--------|-----------------|
| 합 계 | | | | | | |
| 제1금고 | | '12.01.01~ '15.12.31. | | 000 (당초) | | 000 ('14.3월) |
| 제2금고 | | '12.01.01~ '15.12.31. | | 000 (1회추경) | | 000 ('14.8월) |
| i | | | | | | |

-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 예산편성액: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 ☆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백만원)

| 추진 부서 | 기시대 | | 예산 | 편성 | | 기취에 | 집행잔액 | nj – | |
|----------|-----|----|----|-----|----|-----|-----------------|------|--|
| 부서 | 사업명 | 분야 | 부문 | 통계목 | 금액 | 집행액 | 집행진액 (불용액 등)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비고란 작성 예시) ① 000 지원사업(000주관 000행사에 00용도의 경비 지원, 000단체 등에 00용도의 경비지원, 000재단에 000용도로 출연 등), ② 000 설치·제작·조성사업 (000기념 000조형물 제작, 000를 위한 시설물 설치, 000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등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시가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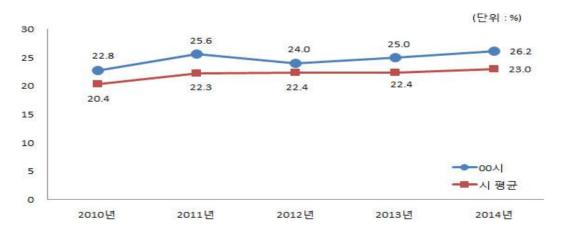
| 구 분 | 합계 | 기초생활 보장 (081) | 취약계층 지원 (082) | 보육·기족 및 여성 (084) | 노인· 청소년 (085) | 노동 (086) | 보 훈 (087) | 주택 (088) | 사회 복지 일반 (089) |
|--------|----|---------------------|---------------------|------------------------|---------------------|-------------|-------------------------|-------------|-------------------------|
| 합 계 | | | | | | | | | |
| 국 비 | | | | | | | | | |
| 시·도비 | | | | | | | | | |
| 시·군·구비 | | | | | | | |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 구 분 | 연 도 별 | | | | | | |
|----------------|-------|------|------|------|------|--|--|
| ी स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 세출결산액(A) | | | | | | | |
| 사회복지분야(B) | | | | | | | |
| 사회복지분야비율(B/A) | | | | | | | |
| 인구수 (C) | | | | | | | |
| 주민1인당 | | | | | | | |
| 사회복지비(B/C)(천원) | | | | | | | |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 주요 증감원인, 동종단체 대비 많은(적은) 사유를 설명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시범)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세출결산액 (A) | 교부액(B) | 비율 (B/A) | 비고 |
|-----------------|-----------|--------|----------|----|
| 계 | | | | |
| 민간경상보조 (307-02) | | | | |
| 사회단체보조 (307-03) | | | | |
| 민간행사보조 (307-04) | | | | |
| 사회복지보조 (307-10) | | | | |
| 민간자본보조 (402-01) | | |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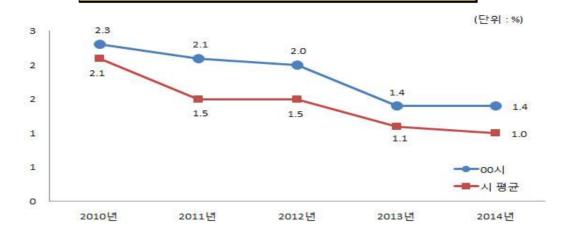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연 도 별 | | | | | | |
|-----------|------|-------|------|------|------|--|--|--|
| 一 七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
| 세출결산액 | | | | | | | | |
| 지방보조금(민간) | | | | | | | | |
| 비율 | | | | | | | | |

※ '10 ~ '13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지방보조금 주요 증감원인 등 설명

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 보조사업명 | 보조 사업자 | 보조금 집행액 | 최종 정산액 |
|-------------------|-----------|------------|-----------|
| | 총계 | | |
|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 ○○단체 등 | 100 | 100 |
|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 | △△단체 | 500 | 490 |
|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사업 지원 | □□단체 | 50 | 50 |
| ÷ | : | : | |
| : | : | : | |

※ 별지작성 가능

❖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 행사명 | 행사시기 (월) | 보조 사업자 | 보조금 집행액 | 최종 정산액 |
|-------------|-------------|-----------|------------|-----------|
| 총 계 | | | | |
| ○○관광박람회 보조 | 3월 | ○○단체 등 | 400 | 400 |
| ○○전국체육대회 보조 | 5월 | △△단체 | 280 | 217 |
| i i | : | | : | |
| i : | : | | : | |

※ 별지작성 가능

7-3.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시가 2014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

| 세출결산액 (A) | 행사·축제경비 (B) | 비율 (B/A) | 비고 |
|-----------|-------------|----------|----|
| |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 연도별 | | |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출결산액 | | | | | |
| 행사·축제경비 | | | | | |
| 비율 | | | | |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 주요 증감원인, 동종단체 대비 많은(적은) 사유를 설명하되, 가급적 대표적인 사업의 집행액 등을 제시

🚯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13년도 현재액 | | '14년도 현재액 | 이모 | | |
|------|--------------|--------------|--------------|---------|--------------|----------|
| 종류별 | 현재액 (A) | 계 (B=C-D) | 조성액 (C) | 사용액 (D) | 현재액 (A+B) | 일몰 기간 |
| 합 계 | | | | | | |
| 00기금 | | | | | | |
| □□기금 | | | | | | |

-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 ❖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백만원)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 | | | |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연도별 증감, 동종단체 대비 많은(적은) 사유 등 설명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〇〇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 구 분 | | 동종 자치단체 평균 | 배점 | 지표의 의미 |
|--------|--------------------------|--|------------------|-----|---|
| | 합 계 | | | 104 | |
| |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 | | 15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
| |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 | | 20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
| |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 | 5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
| 분 |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 | 10 |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
| 석 항 | 경상적 경비 비율 | | | 5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 목 | 일몰제 적용률 | | | 15 |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
| | 채권 관리 적정성 | | | 15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 | 15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
| | 가점 | | | 4 |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5.00. 예정)
-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 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재정고 링크 아님)

8-2. 공유재산 및 물품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13년도 | 드 현재액 | 증 | 가 | 감 | 소 | ′14년5 | 든 현재액 | 비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비ᅶ |
| 합 계 | | | | | | | | | |
| 토 지 | | | | | | | | | |
| 건 물 | | | | | | | | | |
| 입목죽 | | | | | | | | | |
| 공작물 | | | | | | | | | |
| 선 박 | | | | | | | | | |
| : | | | | | | | | | |

-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4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개, 백만원)

| 7. 13 | '13년도 현재액 | | 증 가 | | 감 소 | | '14년도 현재액 | | 비고 |
|-------|-----------|----|-----|----|-----|----|-----------|----|----|
| 구 분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비포 |
| 계 | | | | | | | | | |
| 구 매 | | | | | | | | | |
| 관리전환 | | | | | | | | | |
| 양 여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공유재산 | | | | | |
| 물 품 | | | | | |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 물품 등 재산의 증감원인 설명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 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세출결산액 | 불산액 출자금 | | 출 역 | 비고 | |
|---------|-------|---------|---------|--------|---------|--|
| ੀ ਢ | (A) | 금액 (B) | 비율(B/A) | 금액 (C) | 비율(C/A) | |
| 합 계 | | | | | | |
| 일 반 회 계 | | | | | | |
| 특 별 회 계 | | | | | | |
| 기 금 | | | | | | |

-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연도별 비교 | | | | | | | |
|----------------|--------|------|------|------|------|--|--|--|
| T t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
| 세출결산액 (A) | | | | | | | | |
| 출자금 (B) | | | | | | | | |
| 출자금 총액(C) | | | | | | | | |
| 출자금 비율 (B/A) | | | | | | | | |
| 출연금 (D) | | | | | | | | |
| 출연금 비율(D/A) | | | | | | | | |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연도별 증감액이 클 경우 사유를 설명

※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 기관·단체명 | 금액 | 근거 (법·조례명 등) | 내용 |
|-----|------|--------|----|-----------------|----|
| | 소계 | | | | |
| 출자금 | 일반회계 | : | | | |
| 돌사급 | 특별회계 | : | | | |
| | 기 금 | : | | | |
| | 소계 | | | | |
| 출연금 | 일반회계 | : | | | |
| 굴인급 | 특별회계 | : | | | |
| | 기 금 | : | | | |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 별지작성 가능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 | 구 분 | 임직원수 | 출자 · 출연금 | 자산 | 부채 |
|--------------------|-----|------|-------------|----|----|
| | 총계 | | | | |
| 출자 | 소계 | | | | |
| 기관 | 기관명 | | | | |
| 기 선 | : | | | | |
| 출연 | 소계 | | | | |
| 1 | 기관명 | | | | |
| 기관 | : | | | | |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출자기관이란?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출연기관이란?

-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 | 구분 | 임·직원수 | 총자산 | 총부채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경영평가 등급(가~마) |
|------|-----------------------|-------|-----|-----|-----|-----|-------|-----------------|
| 직영 | 00 | | | | | | | |
| 7 6 | $\triangle \triangle$ | | | | | | | |
| 공단 | 00 | | | | | | | |
| 5 1 | $\triangle \triangle$ | | | | | | | |
| 공사 | 00 | | | | | | | |
| 6-75 | $\triangle \triangle$ | | | | | | |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4회계연도 결산)
-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4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직영 | 00 | | | | | |
| ~ ~ ° | 00 | | | | | |
| | 00 | | | | | |
| 공단 | 00 | | | | | |
| | 00 | | | | | |
| | 00 | | | | | |
| 공사 | 00 | | | | | |
| | 00 | | | |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크게 증감한 공기업은 사유를 설명

몘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제표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3년 | 2014년 | 중 감 | 동종단체 평균 |
|-------|-------|-------|-----|---------|
| 자산 총계 | | | | |
| 부채 총계 | | | | |
| 비용 총계 | | | | |
| 수익 총계 | |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바로가기 기재*)

●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2. 재정분석 결과

| | 분 야 (분석지표) | 해당자치단체 | 전국평균 | 동종단체평균 |
|-------------|---------------------|--------|------|--------|
|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 | |
| | 2. 실질수지비율 | | | |
| | 3. 경상수지비율 | | | |
| | 4. 관리채무비율 | | | |
| I.재정 건전성 | 5. 관리채무부담비율 | | | |
| | 6. 관리채무상환비율 | | | |
| |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 | | |
| | 8. 공기업부채비율 | | | |
| |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 | |
| | 10. 자체세입비율 | | | |
| | 10-1. 자체세입증감률 | | | |
| | 11. 민간이전경비비율 | | | |
| |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 | | |
| | 12. 출연・출자금비율 | | | |
| 표 제기 중이지 |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 | | |
| Ⅱ. 재정 효율성 | 13. 의무지출비율 | | | |
| | 13-1. 의무지출 증감률 | | | |
| |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 | | |
| |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 | | |
| | 15. 자본시설지출비율 | | | |
| |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 | | |
| |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 | |
| |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 | |
| |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 | |
| |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 | |
| Ⅲ. 재정운용노력 |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 | |
| m. 71782827 | 21. 인선비 절담 도덕도 | | | |
| |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 | |
| |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 | |
| |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 | |
| |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 | |

-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6.2월 예정)
- ※ 위의 표는 과거 분석지표를 예시로 제시한 것 이며, 공시할때는 2015년(FY14) 분석 지표로 변경하여 공시
-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 설명하고, 분석결과 내용 중 특이사항 및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설명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 지 표 명 | 산 식 | 속성 | 지표값 설명 |
|--------------------------|--|--------------|---|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1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
| 2. 실질수지비율 |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1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
| 3. 경상수지비율 |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downarrow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
| 4.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downarrow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
| 5. 관리채무부담비율 |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
| 6. 관리채무상환비율 |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 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
|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downarrow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
| 8. 공기업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지본 × 100 | \downarrow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
|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총자본 × 100 | 1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1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
|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downarrow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
|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
|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downarrow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
|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
|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 시설비지출액/정책시업비 × 100 | 1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
|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1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1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
|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장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장수한 과세총액 | ↑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1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
|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1-(지방의화경비 결산액/지방의화경비 기준액) | 1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
|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
| 24. 행시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1 | 행사 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
|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1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건전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이행 사항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기술
 - ⇒ 별도의 첨부형태로 게시(HWP 등)

9-4.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연 도 별 | | | | | |
|--------------------|-----|-------|------|------|------|------|--|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비과세·감면액 (A) | | | | | | | |
| | 비과세 | | | | | | |
| | 감면 | | | | | | |
| 지방세 징수액 (B) | | | | | | | |
| 비과세·감면율 (A/A+B) | | | | | | | |

❖ 기능별 현황

(단위: 백만원, %)

| | ′13년 | 도(A) | ′14년 | 도(B) | 중감(C | =B-A) |
|-------------|------|------|------|------|------|--------------|
| 분 야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중감률 (C/A) |
| 총 계 | | | | | | |
| 일 반 공 공 행 정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교 육 | | | | | | |
| 문화 및 관광 | | | | | | |
| 환 경 보 호 | | | | | | |
| 사 회 복 지 | | | | | | |
| 보 건 | | | | | | |
| 농 림 해 양 수 산 | | | | | | |
| 산업·중소기업 | | | | | | |
| 수송 및 교통 | | | | | | |
| 국토 및 지역개발 | | | | | | |
| 과 학 기 술 | | | | | | |
| 국 가 | | | | | | |
| 외 국 | | | | | | |
| 기 타 | | | | | | |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합 계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 제한법 | 감면조례 | 조세특례 제한법 | 기타 |
|----------------|---------|-----|------|--------------|------|-------------|----|
| | 합 계 | | | | | | |
| | 소 계 | | | | | | |
| | 취득세 | | | | | | |
| | 등록면허세 | | | | | | |
| | 레저세 | | | | | | |
| 보 E | 지방소비세 | | | | | | |
| 통 세 | 주민세 | | | | | | |
| | 재산세 | | | | | | |
| | 자동차세 | | | | | | |
| | 지방소득세 |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 소 계 | | | | | | |
| 목 적 세 | 도시계획세 | | |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 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도)의 2014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
| 총 계 | | |
| 여성정책추진사업 | |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 | |

-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
| 총계 | | | |
| 여성정책추진사업 | | |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 | | |

-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9-7.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시는 모델 ○(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 당초 세출예산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 모델 |
|---------|--------------|----|
| | | |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 구분 | 모델안 1 | 모델안 2 | 모델안 3 |
|------------------------|--|---|--|
| 총 ^칙 운영계획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
| 위 원 회 |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
| | | |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
| 지 원 기 타 부 칙 |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 201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
| | 7,350 | | |
| 000과 | 자전거도로내 거치대 확충사업 | 400 | 신규사업 |
| 000과 | 공공장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사업 | 10 | " |
| " |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및 보수사업 | 800 | " |
| n, | 연결도로 개설사업 | 1,000 | 계속사업 |
| | :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9-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 원가정보 | | | |
|--------|------|------------------|------|-------------|--------------------|--|
| 행사·축제명 | 개최기간 | 주요내 용 | 총원가 | 사업수익 (B) | 순원가 (C)=(A)-(B) | |
| | | | (A) | (B) | (C)=(A)-(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사업 : 광역 5천만원 이상, 기초 1천만원 이상

※ 주요내용: 전시, 공연, 체험행사 등 간략히 기재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2015년(2014년 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작성 서식

[행사 · 축제명] ○○○

□ 사업개요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O 사업목적 :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4.○.○○~○.○○(○일간) / ○○○○년 / ○회
- O 사업내용 :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시·도 시·군·구 / ○○○축제 추진위원회
- 행사축제 유형(택1):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처원)

| | | (セリ・セモ) |
|-------|----------------------------|---------|
| 구 분 | '14년 | '13년 |
| 예 산 액 | ○○○ (국비○○ , 시도비○○, 시군구비○○) | 0000 |
| 집 행 액 | ○○○ (국비○○ , 시도비○○, 시군구비○○) | 0000 |

□ 행사·축제 원가

(단위: 천원)

| | | 총원가 | (비용) @ | | | | 101 1 01/1 | al a | 수워가/지났다세 수브다에 |
|--------------|------------|-------------|--------|-------------|------|---------------|-----------------|--------|-------------------------|
| | 구 | 분 | 합계 | 지자체 ○○%* | 수탁기관 | 사업수익(수익) 📵 | | 익) (b)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
| | | 계 | | | | | 계 | | |
| | 인: | 건비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인쇄비 | | | | | 국비 | | |
| | | 소모품비 | | | | | | | |
| | | 제세공과금 | | | | 보 | | | |
| | 행 사 | 보험료 | | | | 조 금 | | | |
| | 직접비 | 출장비 | | | | | | | |
| | '- ' | 연구개발비 | | | | | 시도비 | | |
| | | 업무추진비 | | | | | | | |
| | | 연료비 | | | | | | | |
| 운영비 | | 기타행사 운영비 | | | | | 사용료 | | |
| ^B | 대 외 홍보비 | 홍보 및 광고비 | | | | | 수익 | | |
| | | 소 계 | | | | 서 | | | |
| | 시 설 장비비 | 행사관련 시설비 | | | | 비스 | | | |
| | | 임차료 | | | | 요 | 71.51 | | |
| | | 소 계 | | | | 금 | 기 타 수 익 | | |
| | 참가자 보상비 | 외빈초청여비 | | | | | T = | | |
| | 보상비 | 행사실비 보상비 | | | | | | | |
| | 감가 | · 상각비 | | | | | | | |
| | 기 | 타 | | | | ** 수탁 입(00 | 기관 자체수)조직위) | | |

□ 효과(결과)

| 계 획 | 결 과 |
|-----------------------------|--------------------------|
| ○ 지역경제파급효과 : 천원 | ○ 지역경제파급효과 : 천원 |
| ○ 고용유발효과 : 명 | ○ 고용유발효과 : 명 |
| ○ 유료입장객 수 : 명 | ○ 유료입장객 수 : 천원 |
| ○ 입장수익 : 천원 | ○ 입장수익 : 명 |
| (근거) 재정투융자심사시 제시된 효과(OO연구원) | (근거) 재정투융자사업 평가결과(○○연구원) |

9-9.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 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사신축 사업명 | 총사업비 (백만원) | 사업기간 | 용도 (본청, 의회, 기타) |
|-------------|---------------|----------------------------------|--------------------|
| ○○○ 주민센터 신축 | 6,510 | 2013. 8. 1 ~ 2014. 11. 1(1년 3개월) | 기타(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대상사업 : '14년 준공된 사업
- ※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 ※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작성 서식(안)

[청사신축 사업명]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1. 일반현황

| | 구 분 | | | | 내 | 용 | | | | | 비고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인구 수 | | | 공일 | -1- | , | | 준공일 명(2014. 7월 기준) | | | | |
| 일 반 | | | 명(2014 | | 기순 |) | | | | <u> 기순)</u> | | |
| 현황 ○ 공무원 수 | | | | 공일 ㅁ | l | | | | 준공일 | пв | | 정원/현원 |
| | 8 0 0 1 2 1 | | 명/ 차- | <u>명</u> 공일 | } | | | 명/ | | 명 | | |
| | ○ 재정자립도 | | | <u> </u> | | | | L | <u> </u> | | | |
| | ○ 기존청사 | | | | | | | | | | | |
| | 용도 | 준공연도 | 부지 | 면적 | - | 기준민 | 부전 | 거묵(| 연면적 | 층수 | | 비고 |
| | | | 1 * 1 | | | 1 1 1 | - 1 | | | (지하/지 | 상) | -1- |
| | 본청/의회/기타 · | | | | | | | | | | | |
| | ○ 청사신축 필 | O 서 | (町 O | .성 및 | 71.511 | | ıL ⊏\ | | | | | |
| | | ж. | (<u>글 쓰</u> 착공 | | <u>/ - </u> | 표 | <u>라 등)</u> ~ / | (년) | | | | |
| 사 업 | ○ 사업기간 | | 군공 | 01 | | | ~ (| <u>. 년/</u> (년) | | | | |
| 개 요 | ○ 사업수행방식 | 4 | | 설계·시공 | 공일괄 | 입찰, | 적격심. | | ·제, 최저 | 가 낙찰저 | l), 1 | 누의계액 |
| | ○ 추정(예정)기 | | | | | | ;금액 | | | 낙찰 | | % |
| | ○ 청사 규모 | | | | | | | | | | | |
| | 용도 | 준공연도 | 공연도 부지면적 | | : | 기준면적 건 | | 건물 |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승 | | Λŀ | 비고 |
| | 본청/의회/기타 | | | | | | | (1) (1) (1) | | 6)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조달 | 현황 | | | | | | | | | | |
| | 구분 | | 합계 국브 | | 라비 | 비 시도비 | | <u>-</u> 비 | 시군구비 | | | 지방채 |
| | 합계 | | | | | | | | | | | |
| | Y-3 이전 | | | | | | | | | | | |
| | Y-2 | | | | | | | | | | | |
| | Y-1 | | | | | -+ | | | | | | |
| 소 요 | 준공연도(Y) | HOUL | | | | | | | | | | |
| 예산액 | ○ 세부 내역별 | 사업비 | | | | αг | 별 사업 | lыl | | | | |
| | 구분 | | Y-3 0 | 저 | | <u>인포</u> -2 | <u> </u> | Y-1 | 주. | 공연도(Y) | | 비고 |
| | 1) 토지매입비 | | . 5 -1 | | • | | | | <u> </u> | <u> </u> | | |
| | 2) 설계비 | | | | | | | | | | | |
| | 3) 감리비 | | | | | | | | | | | |
| | 4) 공사비 | | | | | | | | | | | |
| | 5) 기타부대비 | | | | | | | | | | | |
| | 구분 | ÷1 | 년 | 월 | | - | 결과 | | 관련. | | | 비고 |
| | 중기재정계 타당성 조 | | | | | | | | <u>자</u> : 자: | | + | |
| 추 진 | 투융자심사 | | | | | | | | <u>~ ^</u> ^ 중 | | | |
| ' └ 일 정 | 공유재산관리 | | | | | | | | <u></u> 지방. | | | |
| 2 0 | 설계 | 47 | | | | | | | - 사(8) 자: | | | |
| | 착공 | | | | | | | | 자 | | Ī | |
| | 준공 | | | | | _ | | | 자: | 체 | | |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 2 | 궁 종 | 점유율 | 사업공사비 | 비고 |
|-----------------|------|-----|-------|----|
| | 금액 | | | |
| 합계 | 원/m² | | | |
| | 비율 | | | |
| | 금액 | | | |
| 건 축 | 원/m² | | | |
| | 비율 | | | |
| | 금액 | | | |
| 기계 | 원/m² | | | |
| | 비율 | | | |
| | 금액 | | | |
| 전 기 | 원/m² | | | |
| | 비율 | | | |
| | 금액 | | | |
| 통 신 | 원/m² | | | |
| | 비율 | | | |
| | 금액 | | | |
| 부대시설 (토목,조경) | 원/m² | | | |
| | 비율 | | | |

9-10. 수의계약 현황

■ 우리 ○○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백만원)

| | 원 이상 실적(A)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 | 用 | 비고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 | | | |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 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 연도별 | | | | | | | |
|-------------|----|------|------|------|------|------|--|--|--|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
| 수의계약 실 적 | 건수 | | | | | | | | |
| 실 적 | 금액 | | | | | | | |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백만원)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세출 효율화) | (세입 확충) |
| | |

-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4.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편에 공시
-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 |
|------------------|------------|-------|--|--|--|
| 변경생득 | 2014년 | 2015년 | | | |
| 계 | | | | | |
| 인건비 절감 | | | | | |
| 지방의회경비 절감 | | | | | |
| 업무추진비 절감 | | | | | |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 | | | |
|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 | | | |
| 지방청사 관리 · 운영 | | | | | |
| 읍면동 통합운영 | | | | |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 |
|----------------|------------|-------|--|--|--|
| च ठ ४ च | 2014년 | 2015년 | | | |
| 계 | | | | |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 | | | |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 | | |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 | | | |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 | | | |
| 탄력세율 적용 | | | | |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 | |

🕕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 우리 ○○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 감사기관명 | 처분일시 | 제 목 (감사내용) |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해당 감사기관 URL 주소)
- ※ '14 ~ '15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 '14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2014회계연도에 우리 ○○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 구 분 (감액, 증액) | 감액 <i>F</i> 중액 사유 |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 지방교부세 감액 <i>F</i> 중액금액 |
|-----------------|-------------------|--------------------|---------------------------|
| 감액 | 법령위반 과다지출 | 재난관리기금 목적외 사용 | 감액 50백만원 |
| 감액 | 수입정수 태만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 감액 20백만원 |
| 증액 | 재정분석 우수 | 2014년 제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 증액 50백만원 |

-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우리 ○○시에서 '14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총사업비 | 2013 년까지 집행사업비 | 2014 년 소요사업비 | 2015 년 이후 사업비 | 사업완료 예정연도 | 투용자 심사연도 | 현재까지 진척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사업)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4년에 추진한 사업
- ※ 총사업비는 투융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경우 '14년말 기준으로 작성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 총사업비는 투융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경우 '14년말 기준으로 작성
- ※ 담당자 연락처, 필요성, 사업개요, 총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업변경 내역 등 순서에 따라 필히 기재
- ※ 대상사업 중 "의뢰심사"(광역은 중앙, 기초는 중앙 및 시도 의뢰)사업은 의무공시, "자체 심사"사업은 사업규모(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공시(최소 10건 이상)

■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작성서식 예시)

- 사업별로 별지 작성

| 사업명 | | | | 담당 | }자 | 000과 | 홍길동 | (2 000) | -0000) |
|--|---------|-------|--------------------------|-------------|----|------|------------|-----------------|---------|
| □ 사업 ○ | 목적 및 | 필요성 | } | | | | | | |
| | .al A | | | | | | | | |
| □ 사업○ 기 | | | | | | | | | |
| 0 위 | | | | | | | | | |
| ㅇ 규 | 모: | | | | | | | | |
| □ ⋩♀ | 재위 민 | 사이비 | 집행현황 | | | | | | |
| | | 7111 | | | | | | | |
| | | | | | | | | ` | : 백만원) |
| 구 분 | 란 | 계 | 집 기투자 | 행액 2014년 | | 201 | 향후 2 5년 | 소요액 2016년 | ا ما ق |
| 계 | | | 71171 | 2014 1 | | 201 | J L | 2010 1 | 2 -1-4- |
| , | 비] | | | | | | | | |
| 시 도 시군구 | | | | | | | | | |
| 지 방 | 채 | | | | | | | | |
| 민간자 | ·본 타 | | | | | | | | |
| | Ч | | | | | | | | |
| □ 추진 ○ ○ | 상황(추진 | 빈단계 | 및 진도 : | %) | | | | | |
| □ 향후○○ | 계획 | | | | | | | | |
| 이 사연 | | · 사업비 | 시) , 사업기간, 현재로 구분 | | 등에 | 변경약 | 이 있는 | · 경우 | 변경된 |

11-2. 지방채 발행사업

■ 우리 ○○시에서 '14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श्रीकीम | 총 | | | 재원구성 | | | 지방채 | 진척률 |
|---------|-----|-----|----|------|------|----|------------|-----|
| 사업명 | 사업비 | 지방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지방채 숭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4년에 추진한 사업
-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1-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 작성요령은 투융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재원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예정액을 필히 기재

■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작성서식 예시)

- 사업별로 별지 작성

| 사업명 | | | 담당자 | 000과 | 홍길동 | (2000 - | -0000) |
|--------------|---------------------------------------|----------------------------------|------------------|------|------|----------------|--------|
| □ 사업목적 ○ | 및 필요성 | 3 | | | | | |
| □ 사업개요 | <u>-</u> | | | | | | |
| ○ 기 간 : | | | | | | | |
| ○ 위 치 : | | | | | | | |
| ○ 규모: | | | | | | | |
| | ! 및 사업 ^비 ^{비 :} |] 집행현황 백만원 | | | | | |
| | | | | | | (단위 | : 백만원) |
| 구 분 | 계 | 집행 | | 2011 | 향후 2 | | 1 A) & |
| 계 | | 기투자 | 2014년 | 2015 | 9년 | 2016년 | ! 이꾸 |
| 지 방 채 국 비 | | | | | | | |
| 시도비 | | | | | | | |
| 시군구비 | | | | | | | |
| 기타 | | | 그 티크 티 베스테 제 고 에 | | | | |
| | ł(추진단계 | 마, 향후 소요액 : 자 및 진도 : ' | | 포함 | | | |
| ○ 사업규 | | 시) l, 사업기간, 수 · 현재로 구분히 | | 변경ㅇ | 기 있는 | 경우 | 변경된 |

11-3. 민간투자사업

■ 우리 ○○시에서 '14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사업 유형 | 사업명 | 민간 사업자 | 총사업비 | /13년까지 부담액 | '14년 부담액 | '15년 이후 부담 예정액 | 계약 기간 |
|----------|-----|-----------|------|---------------|-------------|-------------------------|----------|
| BTL | | | | | | | |
| | | | | | | | |
| ВТО | | | | | | | |
| | | | | | | | |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4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5년 이후는 추정액
-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 ☞ 재정부담액이 큰 사업 위주로 재정부담이 큰 사유를 설명

11-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 작성요령은 투융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총사업비, 최소수익보장 등 계약조건, 지금까지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액, 향후 부담예정액, 계약조건변경 사항 등을 필히 기재

■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작성서식 예시)

- 사업별로 별지 작성

| 사업명 | | | 담당자 | 000과 홍길동 | (2 000-0000) |
|--|--------------------------------------|-------------------|--------------|----------------------|----------------------|
| □ 사업 ○ | 목적 및 필요/ | 형 | | | |
| | | | |) 민간사업자 : | |
| O 계약 | 부담 현황 약조건(최소수익 금까지 재정부딤 | | , | . 부담예정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년 계 국 시 도 시군구 기 | 비 | 재정투 기투자 | 부담액 2014년 | 부담 ං 2015년 | |
| □ 추진 ○ ○ | 단계(운영 중, | 시공 중, 시공 | ·준비 중 택 | 1) | |
| □ 향후○○ | 계획 | | | | |
| 0 사 | 변경 내역(해딩 업규모, 총사업비 우 변경된 상세1 |), 사업기간, <u>숙</u> | | | 경이 있는 |

제2절 특수공시의 항목선정과 작성기준

■ 분야별 항목선정

-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관심사항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2~3배수 선정, 5건 이상 재정공시
- '14년 재정운영 결과에 한정하며, 미래의 계획 등은 제외 (재정운영 결과로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함)
 -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유치사업의 국비·지방비 등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와 추진실적
 - ▶ 노인치매병원 유치, 실버타운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
 -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 결과 전년 대비 피해축소 등 안전관련 주민관심사항
 - ▶ 재해위험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재해관련 상습피해 지역 등
 - 지역 전략산업의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 ▶ BIO산업단지, 의료도시 활성화 등
 - 지역 특수 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재정 중점 지원 등 주민관심사항
 -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지역현안사항 추진실적

■ 작성요령

- 특수공시 내용을 사업목적, 기간, 사업규모, 추진상황, 사업효과 등을 알기 쉽게 개조식으로 작성
- 도표, 그래프, 사진 등을 활용, 주민의 이해도 제고

제3절 공통공시(예산)의 내용별 작성기준

2016년 ○○○(자치단체명) 재정공시(예산)

2016. 2.

○○시장(도지사)(인)

- ◈ 우리 시(도)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억원이 증가(감소) 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 (억원)보다 억원이 많(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억원입니다.
- ◈ 우리 시(도)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 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 ◈ 우리 시(도)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억원의 흑자(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도)의 재정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 에서 보실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홍길동(전화번호)

🕕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 N-1 A | A) -1-1 | C | ○광역시 | 1 | 동종 | 자치단체 | 평균 |
|----------|-----------------------|--------------|--------------|---------------|--------------|--------------|---------------|
| 재정운 | 영 결과 | ′16년도 (A) | ′15년도 (B) | 증감 (C=A-B) | ′16년도 (A) | '15년도 (B) | 증감 (C=A-B) |
| ① 공 | 통공시 | | | | - | | |
| | 세 입 예 산 | | | | | | |
| ② 예산규모 | 세 출 예 산 | | | | | | |
| | 중기지방재정 계 획 | 항목별 | 공시내용 | 참조 | | | |
| |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 항목별 | 공시내용 | 참조 | | | |
| | 재정자립도[당초] | | | | | | |
| ③ 재정여건 | 재정자주도[당초] | | | | | | |
| | 통합재정수지[당초] | | | | | | |
| | 성 인 지 예 산 | 항목별 | 공시내용 | 참조 | | | |
| | 주 민 참 여 예 산 | 항목별 | 공시내용 | 참조 | | | |
| ④ 재정운용계획 | 성과계획서 | 항목별 | 공시내용 | 참조 | | | |
| | 재정운용상황 개 요 서 | 항목별 | 공시내용 | 참조 | | | |
| | 예산편성기준별 운 영 상 황 | 항목별 | 공시내용 | 참조 | | | |
| | 보통교부세 지체노력 반 영 현 황 | 항목별 | 공시내용 | 참조 | | | |

- ▶ 동종단체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②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백만원)

| 세입예산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 | |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 연 도 | 2012 | 2 | 2013 | 3 | 2014 | Į. | 2015 | 5 | 2016 | 6 |
|---------------|------|----|------|----|------|----|------|----|------|----|
| 세입재원별 | 금액 | 비중 |
| 합 계 | | | | | | | | | | |
| 지 방 세 | | |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조정교부금 등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백만원)

| 세출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 | |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백만원)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 |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 연 도 | 2012 | 2 | 2013 | 3 | 2014 | 1 | 2015 | 5 | 2016 | 5 |
|-----------|------|----|------|----|------|----|------|----|------|----|
| 분야별 | 금액 | 비중 |
| 합 계 | | | | | | | | | | |
| 일반공공행정 | | | |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문화 및 관광 | | | | | | | | | | |
| 환 경 보 호 | | | | | | | | | | |
| 사 회 복 지 | | | | | | | | | | |
| 보 건 | | | | | | | | | | |
| 농림해 양수산 | | | | | | | | | | |
| 산업·중소기업 | | | | | | | | | | |
| 수송 및 교통 | | | | | | | | | | |
| 국토 및 지역개발 | | | | | | | | | | |
| 과 학 기 술 | | | | | | | | | | |
| 예 비 비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백만원, %)

| | 구 | - | 분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 계 | 연평균 증가율 |
|---|-----|----------|---|----|------|------|------|------|------|-----|------------|
| 1 |) 세 | | | 이 | | | | | | | |
| | 자 | 체 | 수 | 입 | | | | | | | |
| | 의 | 존 | 수 | 입 | | | | | | | |
| | 지 | ㅂ | } | 채 | | | | | | | |
| | | 전수 내- | | | | | | | | | |
| 2 | 세 | | | 之吉 | | | | | | | |
| | 경 | 상 | 지 | さぎ | | | | | | | |
| | 사 | 업 | 수 | 分 | | | | |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산출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15년말 또는 '16년 초 안내 예정이며, 공시담당자는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내용을 공시)

③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백만원, %)

| 재정자립도 (B <i>J</i> A) | 세입 합계 (A=B+C+D+E) | 자체세입 (B) | 의존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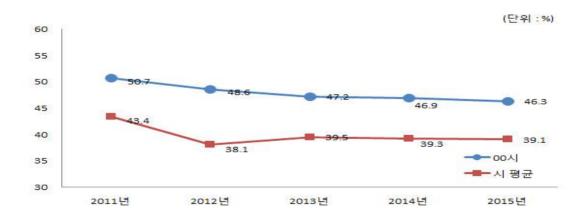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 구 분 | 연도별(%) | | | | | | | |
|------|--------|------|------|------|------|--|--|--|
| ⊤ च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
| 당초예산 | | | | | | | | |
| 최종예산 | | | | | - | | |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와 동종단체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체세입과 의존재원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을 감안)를 설명

3-2. 재정자주도[당초]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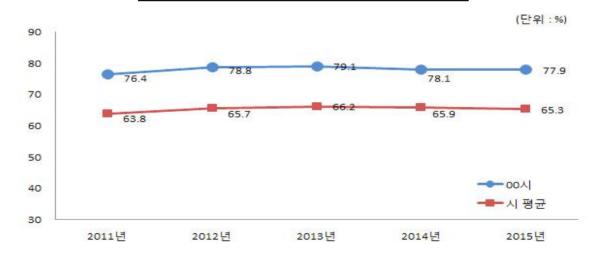
| 재정자주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주재원 (B) | 보조금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 구 분 | 연도별 (%) | | | | | | | |
|----------------|---------|------|------|------|------|--|--|--|
| T ए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
| 당초예산 | | | | | | | | |
| 최종예산 | | | | | - | | |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와 증감 폭이 큰 연도는 사유 및 동종 자치단체 평균과 비교 해서 재정자주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주재원과 보조금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을 감안)를 설명

3-3. 통합재정수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 재정수지입니다.

(단위: 백만원)

| | | | 통 계 | | 투 한재정 | 투 한재정 | 통합재정 수지 2 | | | |
|-------------|-----------|-----------|-----------------|-----------------|----------------|-------------------|---------------|---------------------------|-------------------------|--|
| 회계별 | 세입 (A) | 지출 (B) | 용자 회수 (C) | 융자 지출 (D) | 순융자 (E=D-C) | 순세계 잉여금 (F) | 규모 (G=B+E) | 통합재정 수지 1 H=A-(B+E) | テヘ 2 I=A-(B+E) +F | |
| 총계 | | |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 |
| 기타 특별회계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연도별 비교 | | | | | | | |
|----------|--------|------|------|------|------|--|--|--|
| ा स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
| 통합재정수지 1 | | | | | | | | |
| 통합재정수지 2 | | | | | | | | |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흑자)인 사유,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 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
| 총계 | | |
| 여성정책추진사업 | |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

-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URL 주소)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시는 모델 ○(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 당초 세출예산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 모델 |
|---------|--------------|----|
| | | |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 구분 | 모델안 1 | 모델안 2 | 모델안 3 |
|-------------|--|--|---|
| 총 칙 운영계획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
| 위 원 회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
| 11 & 21 | 7110-4 (10-1 6 6 6)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
| | | |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
| 지 원 | | |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
| 기 타 부 칙 |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
| | 총 액 | 7,350 | |
| 000과 | 자전거도로내 거치대 확충사업 | 400 | 신규사업 |
| 000과 | 공공장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사업 | 10 | " |
| " |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및 보수사업 | 800 | " |
| " | 연결도로 개설사업 | 1,000 | 계속사업 |
| | :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4-3. 성과계획서

■ (산출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15년말 또는 '16년 초 안내 예정이며, 공시담당자는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내용을 공시)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산출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15년말 또는 '16년 초 안내 예정이며, 공시담당자는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내용을 공시)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산출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15년말 또는 '16년 초 안내 예정이며, 공시담당자는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내용을 공시)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세출 효율화) | (세입 확충) |
| | |

-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
| 변경성국 | 2015년 | 2016년 | |
| 계 | | | |
| 인건비 절감 | | | |
| 지방의회경비 절감 | | | |
| 업무추진비 절감 | | | |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 | |
|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 | |
| 지방청사 관리 · 운영 | | | |
| 읍면동 통합운영 | | |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
| U 9 8 4 | 2015년 | 2016년 | | |
| 계 | | | |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 | | |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 | |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 | | |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 | | |
| 탄력세율 적용 | | | |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 |

별첨 1 자치단체별 인구수(2014년 12월말 기준)

| 자치단체별 | 인구수(명) | 자치단체별 | 인구수(명) | 자치단체별 | 인구수(명) |
|-------|------------|-------|-----------|---------|------------|
| 전 국 | 51,327,916 | 북 구 | 306,974 | 대전광역시 | 1,531,809 |
| 서울특별시 | 10,103,233 | 해운대구 | 423,531 | 동 구 | 245,493 |
| 종로구 | 156,993 | 사하구 | 343,371 | 중 구 | 261,165 |
| 중 구 | 128,065 | 금정구 | 249,856 | 서 구 | 496,132 |
| 용산구 | 235,951 | 강서구 | 79,619 | 유성구 | 327,461 |
| 성동구 | 296,086 | 연제구 | 208,012 | 대덕구 | 201,558 |
| 광진구 | 363,354 | 수영구 | 178,480 | 울산광역시 | 1,166,377 |
| 동대문구 | 363,687 | 사상구 | 242,953 | 중 구 | 238,825 |
| 중랑구 | 418,836 | 기장군 | 144,748 | 남 구 | 347,759 |
| 성북구 | 466,706 | 대구광역시 | 2,493,264 | 동 구 | 176,668 |
| 강북구 | 335,025 | 중 구 | 78,812 | 북 구 | 188,733 |
| 도봉구 | 353,709 | 동 구 | 347,975 | 울주군 | 214,392 |
| 노원구 | 582,552 | 서 구 | 210,770 | 세종특별자치시 | 156,125 |
| 은평구 | 498,644 | 남 구 | 163,492 | 경기도 | 12,357,830 |
| 서대문구 | 310,376 | 북 구 | 444,375 | 수원시 | 1,174,228 |
| 마포구 | 385,439 | 수성구 | 456,505 | 성남시 | 974,608 |
| 양천구 | 486,221 | 달서구 | 606,433 | 의정부시 | 431,112 |
| 강서구 | 585,160 | 달성군 | 184,902 | 안양시 | 600,809 |
| 구로구 | 425,831 | 인천광역시 | 2,902,608 | 부천시 | 855,586 |
| 금천구 | 238,463 | 중 구 | 111,929 | 광명시 | 348,560 |
| 영등포구 | 382,352 | 동 구 | 73,978 | 평택시 | 449,555 |
| 동작구 | 407,470 | 남 구 | 408,305 | 동두천시 | 97,595 |
| 관악구 | 513,186 | 연수구 | 310,703 | 안산시 | 707,876 |
| 서초구 | 449,678 | 남동구 | 514,656 | 고양시 | 1,006,154 |
| 강남구 | 578,114 | 부평구 | 556,992 | 과천시 | 70,156 |
| 송파구 | 664,738 | 계양구 | 339,538 | 구리시 | 186,820 |
| 강동구 | 476,597 | 서 구 | 498,686 | 남양주시 | 636,256 |
| 부산광역시 | 3,519,401 | 강화군 | 67,118 | 오산시 | 208,565 |
| 중 구 | 46,737 | 옹진군 | 20,703 | 시흥시 | 394,639 |
| 서 구 | 118,115 | 광주광역시 | 1,475,884 | 군포시 | 288,408 |
| 동 구 | 94,565 | 동 구 | 100,786 | 의왕시 | 158,482 |
| 영도구 | 132,102 | 서 구 | 310,317 | 하남시 | 148,896 |
| 부산진구 | 387,378 | 남 구 | 219,815 | 용인시 | 961,026 |
| 동래구 | 275,971 | 북 구 | 447,685 | 파주시 | 411,348 |
| 남 구 | 286,989 | 광산구 | 397,281 | 이천시 | 205,014 |

| 자치단체별 | 인구수(명) | 자치단체별 | 인구수(명) | 자치단체별 | 인구수(명) |
|-------|-----------|-------|-----------|-------|-----------|
| 안성시 | 181,896 | 증평군 | 34,771 | 전라남도 | 1,905,780 |
| 김포시 | 340,310 | 진천군 | 65,174 | 목포시 | 239,109 |
| 화성시 | 540,862 | 괴산군 | 38,351 | 여수시 | 290,900 |
| 광주시 | 298,858 | 음성군 | 95,324 | 순천시 | 277,188 |
| 양주시 | 202,072 | 단양군 | 30,948 | 나주시 | 90,669 |
| 포천시 | 155,798 | 충청남도 | 2,062,273 | 광양시 | 152,097 |
| 여주시 | 110,386 | 천안시 | 598,346 | 담양군 | 47,177 |
| 연천군 | 45,363 | 공주시 | 113,621 | 곡성군 | 30,732 |
| 가평군 | 61,213 | 보령시 | 104,321 | 구례군 | 27,170 |
| 양평군 | 105,379 | 아산시 | 293,954 | 고흥군 | 69,641 |
| 강원도 | 1,544,442 | 서산시 | 167,611 | 보성군 | 45,882 |
| 춘천시 | 275,791 | 논산시 | 124,784 | 화순군 | 66,772 |
| 원주시 | 327,292 | 계룡시 | 40,552 | 장흥군 | 43,190 |
| 강릉시 | 215,807 | 당진시 | 162,844 | 강진군 | 39,861 |
| 동해시 | 94,562 | 금산군 | 55,166 | 해남군 | 76,981 |
| 태백시 | 48,258 | 부여군 | 71,754 | 영암군 | 58,852 |
| 속초시 | 82,432 | 서천군 | 57,713 | 무안군 | 81,696 |
| 삼척시 | 72,314 | 청양군 | 32,248 | 함평군 | 35,090 |
| 홍천군 | 70,451 | 홍성군 | 91,866 | 영광군 | 56,833 |
| 횡성군 | 45,373 | 예산군 | 84,919 | 장성군 | 46,273 |
| 영월군 | 40,191 | 태안군 | 62,574 | 완도군 | 53,174 |
| 평창군 | 43,660 | 전라북도 | 1,871,560 | 진도군 | 32,746 |
| 정선군 | 39,425 | 전주시 | 652,877 | 신안군 | 43,747 |
| 철원군 | 47,590 | 군산시 | 278,098 | 경상북도 | 2,700,794 |
| 화천군 | 27,143 | 익산시 | 304,117 | 포항시 | 519,368 |
| 양구군 | 23,888 | 정읍시 | 117,183 | 경주시 | 261,535 |
| 인제군 | 32,475 | 남원시 | 85,643 | 김천시 | 135,456 |
| 고성군 | 30,269 | 김제시 | 90,108 | 안동시 | 168,697 |
| 양양군 | 27,521 | 완주군 | 90,377 | 구미시 | 420,320 |
| 충청북도 | 1,578,933 | 진안군 | 26,474 | 영주시 | 110,780 |
| 청주시 | 831,521 | 무주군 | 25,390 | 영천시 | 100,689 |
| 충주시 | 208,527 | 장수군 | 23,335 | 상주시 | 102,892 |
| 제천시 | 136,805 | 임실군 | 29,966 | 문경시 | 75,911 |
| 보은군 | 34,240 | 순창군 | 30,368 | 경산시 | 253,968 |
| 옥천군 | 52,469 | 고창군 | 60,090 | 군위군 | 24,170 |
| 영동군 | 50,803 | 부안군 | 57,534 | 의성군 | 55,212 |

| 자치단체별 | 인구수(명) | 자치단체별 | 인구수(명) | 자치단체별 | 인구수(명) |
|-------|---------|-------|-----------|---------|---------|
| 청송군 | 26,453 | 경상남도 | 3,350,257 | 창녕군 | 63,502 |
| 영양군 | 18,197 | 창원시 | 1,075,168 | 고성군 | 55,916 |
| 영덕군 | 39,586 | 진주시 | 340,241 | 남해군 | 46,638 |
| 청도군 | 43,993 | 통영시 | 139,439 | 하동군 | 49,223 |
| 고령군 | 35,033 | 사천시 | 116,485 | 산청군 | 35,849 |
| 성주군 | 44,981 | 김해시 | 527,240 | 함양군 | 40,584 |
| 칠곡군 | 122,058 | 밀양시 | 107,765 | 거창군 | 63,137 |
| 예천군 | 45,104 | 거제시 | 248,287 | 합천군 | 50,457 |
| 봉화군 | 34,023 | 양산시 | 292,376 | 제주특별자치도 | 607,346 |
| 울진군 | 52,104 | 의령군 | 29,209 | | |
| 울릉군 | 10,264 | 함안군 | 68,741 | | |

[※] 본 인구통계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주민등록인구 통계 → 연간현황'의 총인구수 ('14.12월말 기준)

^{※ 50}만 이상 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15개)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2014년 기준)

| 자치단체별 | 의원정수(명) | 자치단체별 | 의원정수(명) | 자치단체별 | 의원정수(명) |
|-------|---------|-------|---------|---------|---------|
| 전국 | 3,692 | 동래구 | 12 | 동 구 | 8 |
| 서울특별시 | 525 | 남 구 | 15 | 서 구 | 13 |
| 본 청 | 106 | 북 구 | 13 | 남 구 | 11 |
| 종로구 | 11 | 해운대구 | 17 | 북 구 | 20 |
| 중 구 | 9 | 사하구 | 15 | 광산구 | 16 |
| 용산구 | 13 | 금정구 | 13 | 대전광역시 | 85 |
| 성동구 | 14 | 강서구 | 7 | 본 청 | 22 |
| 광진구 | 14 | 연제구 | 10 | 동 구 | 11 |
| 동대문구 | 18 | 수영구 | 8 | 중 구 | 12 |
| 중랑구 | 17 | 사상구 | 12 | 서 구 | 20 |
| 성북구 | 22 | 기장군 | 8 | 유성구 | 11 |
| 강북구 | 14 | 대구광역시 | 146 | 대덕구 | 9 |
| 도봉구 | 14 | 본 청 | 30 | 울산광역시 | 72 |
| 노원구 | 21 | 중 구 | 7 | 본 청 | 22 |
| 은평구 | 19 | 동 구 | 16 | 중 구 | 11 |
| 서대문구 | 15 | 서 구 | 12 | 남 구 | 14 |
| 마포구 | 18 | 남 구 | 9 | 동 구 | 8 |
| 양천구 | 18 | 북 구 | 20 | 북 구 | 7 |
| 강서구 | 20 | 수성구 | 20 | 울주군 | 10 |
| 구로구 | 16 | 달서구 | 24 | 세종특별자치시 | 15 |
| 금천구 | 10 | 달성군 | 8 | 경기도 | 559 |
| 영등포구 | 17 | 인천광역시 | 151 | 본 청 | 128 |
| 동작구 | 17 | 본 청 | 35 | 수원시 | 34 |
| 관악구 | 22 | 중 구 | 7 | 성남시 | 34 |
| 서초구 | 15 | 동 구 | 7 | 의정부시 | 13 |
| 강남구 | 21 | 남 구 | 16 | 안양시 | 22 |
| 송파구 | 26 | 연수구 | 10 | 부천시 | 28 |
| 강동구 | 18 | 남동구 | 16 | 광명시 | 13 |
| 부산광역시 | 229 | 부평구 | 19 | 평택시 | 16 |
| 본 청 | 47 | 계양구 | 11 | 동두천시 | 7 |
| 중 구 | 7 | 서 구 | 16 | 안산시 | 21 |
| 서 구 | 9 | 강화군 | 7 | 고양시 | 31 |
| 동 구 | 8 | 옹진군 | 7 | 과천시 | 7 |
| 영도구 | 9 | 광주광역시 | 90 | 구리시 | 7 |
| 부산진구 | 19 | 본 청 | 22 | 남양주시 | 16 |

| 자치단체별 | 의원정수(명) | 자치단체별 | 의원정수(명) | 자치단체별 | 의원정수(명) |
|-------|---------|-------|---------|-------|---------|
| 오산시 | 7 | 고성군 | 7 | 익산시 | 25 |
| 시흥시 | 12 | 양양군 | 7 | 정읍시 | 17 |
| 군포시 | 9 | 충청북도 | 162 | 남원시 | 16 |
| 의왕시 | 7 | 본 청 | 31 | 김제시 | 14 |
| 하남시 | 7 | 청주시 | 38 | 완주군 | 10 |
| 용인시 | 27 | 충주시 | 19 | 진안군 | 7 |
| 파주시 | 14 | 제천시 | 13 | 무주군 | 7 |
| 이천시 | 9 | 보은군 | 8 | 장수군 | 7 |
| 안성시 | 9 | 옥천군 | 8 | 임실군 | 8 |
| 김포시 | 10 | 영동군 | 8 | 순창군 | 8 |
| 화성시 | 18 | 진천군 | 7 | 고창군 | 10 |
| 광주시 | 9 | 괴산군 | 8 | 부안군 | 10 |
| 양주시 | 8 | 음성군 | 8 | 전라남도 | 301 |
| 포천시 | 8 | 단양군 | 7 | 본 청 | 58 |
| 여주군 | 7 | 증평군 | 7 | 목포시 | 22 |
| 연천군 | 7 | 충청남도 | 209 | 여수시 | 26 |
| 가평군 | 7 | 본 청 | 40 | 순천시 | 24 |
| 양평군 | 7 | 천안시 | 22 | 나주시 | 14 |
| 강원도 | 213 | 공주시 | 11 | 광양시 | 13 |
| 본 청 | 44 | 보령시 | 12 | 담양군 | 9 |
| 춘천시 | 21 | 아산시 | 15 | 곡성군 | 7 |
| 원주시 | 22 | 서산시 | 13 | 구례군 | 7 |
| 강릉시 | 18 | 논산시 | 12 | 고흥군 | 12 |
| 동해시 | 8 | 계룡시 | 7 | 보성군 | 8 |
| 태백시 | 7 | 당진시 | 12 | 화순군 | 10 |
| 속초시 | 7 | 금산군 | 8 | 장흥군 | 7 |
| 삼척시 | 8 | 부여군 | 11 | 강진군 | 8 |
| 홍천군 | 8 | 서천군 | 9 | 해남군 | 11 |
| 횡성군 | 7 | 청양군 | 8 | 영암군 | 8 |
| 영월군 | 7 | 홍성군 | 10 | 무안군 | 8 |
| 평창군 | 7 | 예산군 | 11 | 함평군 | 7 |
| 정선군 | 7 | 태안군 | 8 | 영광군 | 8 |
| 철원군 | 7 | 전라북도 | 235 | 장성군 | 8 |
| 화천군 | 7 | 본 청 | 38 | 완도군 | 9 |
| 양구군 | 7 | 전주시 | 34 | 진도군 | 7 |
| 인제군 | 7 | 군산시 | 24 | 신안군 | 10 |

| 자치단체별 | 의원정수(명) | 자치단체별 | 의원정수(명) | 자치단체별 | 의원정수(명) |
|-------|---------|-------|---------|---------|---------|
| 경상북도 | 344 | 영덕군 | 7 | 밀양시 | 13 |
| 본 청 | 60 | 청도군 | 7 | 거제시 | 16 |
| 포항시 | 32 | 고령군 | 7 | 양산시 | 16 |
| 경주시 | 21 | 성주군 | 8 | 의령군 | 10 |
| 김천시 | 17 | 칠곡군 | 10 | 함안군 | 10 |
| 안동시 | 18 | 예천군 | 9 | 창녕군 | 11 |
| 구미시 | 23 | 봉화군 | 8 | 고성군 | 11 |
| 영주시 | 14 | 울진군 | 8 | 남해군 | 10 |
| 영천시 | 12 | 울릉군 | 7 | 하동군 | 11 |
| 상주시 | 17 | 경상남도 | 315 | 산청군 | 10 |
| 문경시 | 10 | 본 청 | 55 | 함양군 | 10 |
| 경산시 | 15 | 창원시 | 43 | 거창군 | 11 |
| 군위군 | 7 | 진주시 | 20 | 합천군 | 11 |
| 의성군 | 13 | 통영시 | 13 | 제주특별자치도 | 41 |
| 청송군 | 7 | 사천시 | 12 | | |
| 영양군 | 7 | 김해시 | 22 | | |

※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 • | 지방자치법, | 시행령 | ••••• | 117 |
|---|--------|-----|-------|-----|
| • | 지방재정법, | 시행령 | | 119 |

駡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간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간로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간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간로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
|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방자치법

-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장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청요구를 받은 사항을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 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 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차 정례회는 <u>법 제134조</u>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2. 제2차 정례회는 <u>법 제127조</u>에 따른 예산 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 치는 안건
 -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駡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
|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 (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렁으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 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8. 지방세지출현황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 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 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0조(지방재정 유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 2. 재무제표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우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 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 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 3. 채권관리 현황
- 4. 기금운용 현황
-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6. 지역통합재정통계
-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 관의 경영정보
- 8. 중기지방재정계획
-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정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 가. 교부현황
- 나. 성과평가 결과
-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

-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3. 감사워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 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 하다
- ④ 삭제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 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 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 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 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도지시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 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 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 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
| | |
|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 | |
| 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 |
| 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 | |
| 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 |
| 변동 상황 | |
|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 |
|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 |
|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 | |
| 거 및 관리계획 |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 | |
| 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 |
|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 |
| 통보하여야 한다. | |
| | |

용어 해설

• 색인 및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 129

색이

- 가용재원(可用財源)
-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 결산(決算)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 공유재산(公有財産)
- 국고보조(國庫補助)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 국세 (國稅)
- 금고 (金庫)
- 기금 (基金)
- 기본경비 (基本經費)
- 당기순이익 (當期紙利益)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 목적세(目的稅)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為)
- 보통세 (普通稅)
- 부담금(負擔金)
- 부채 (負債)
- 불용액 (不用額)
- 비용 (費用)

- 사고이월(事故移越)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 수익 (收益)
-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 세외수입(稅外收入)
- 세입(歲入)
-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 세출(歲出)
- 수의계약(随意契約)
- 순계예산(純計豫算)
- 순세계잉여금(純歳計剩餘金)
-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 🌘 예비비 (豫備費)
- 예산(豫算,budget)
- 예산과목(豫算科目)
-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 여성정책추진사업(女性政策推進事業)
- 인건비 (人件費)
-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 예산의 확정(豫算의 確定)
- 예산편성한도액(豫算編成限度額)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 의존수입(依存收入)
-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 일반회계 (一般會計)
-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 잉여금(剩餘金)
- → 자본지출(資本支出)
- 자산 (資産)
- 자체수입(自體收入)
- 제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 재정분석(財政分析)
-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 재정진단(財政診斷)
-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教育財政交付金)

- 지방세 (地方稅)
- △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為)
- 채권(債權)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 총계예산(總計豫算)
-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繁算, supplementary budget)
-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 출연금(出捐金)
- 출자금 (出資金)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 투·융자사업 심사(投·融資事業 審査)
-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 특별회계 (特別會計)
- 품목별 예산(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 회계 (會計)
- 회계연도(會計年度)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マユ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 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 - Transfer - 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為)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 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 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 (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 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 세입(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 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 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가능함

●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 (예: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 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여성정책추진사업 (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 ~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 (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 산 : 정기국회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 (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 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 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 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 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 재정보전금 (財政補塡金)

시·군·구가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재정보전금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서울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 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 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 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 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 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금액 산출기준(2014년 기준) -

| д н | 산 출 | 방 법 |
|----------------------|------------|------------|
| TE | 의장·부의장 | 의 원 |
|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 2,500 × 인원 | 1,800 × 정원 |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 (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 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1.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 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 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為)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u>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u> × 100

-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부동산교부세

◎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익년도 2월말까지('15회계연도부터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i) 지출원의 정산지출 ii)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iii)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 출연금 (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 출자금 (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 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 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투·융자사업 심사(投·融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 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 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워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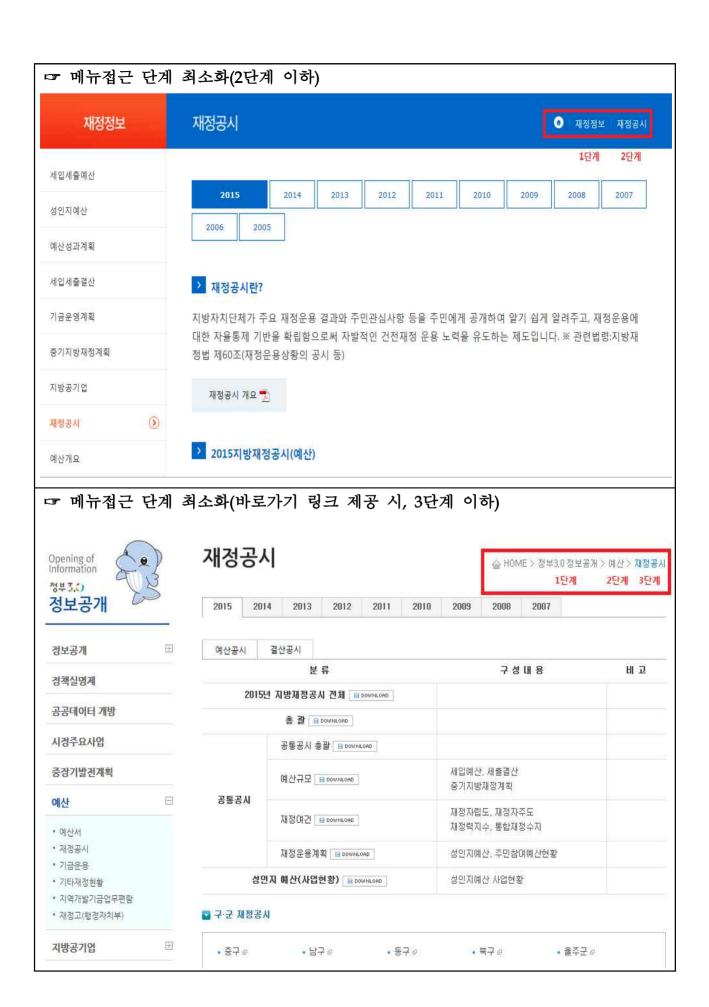
지방재정공시 표준화면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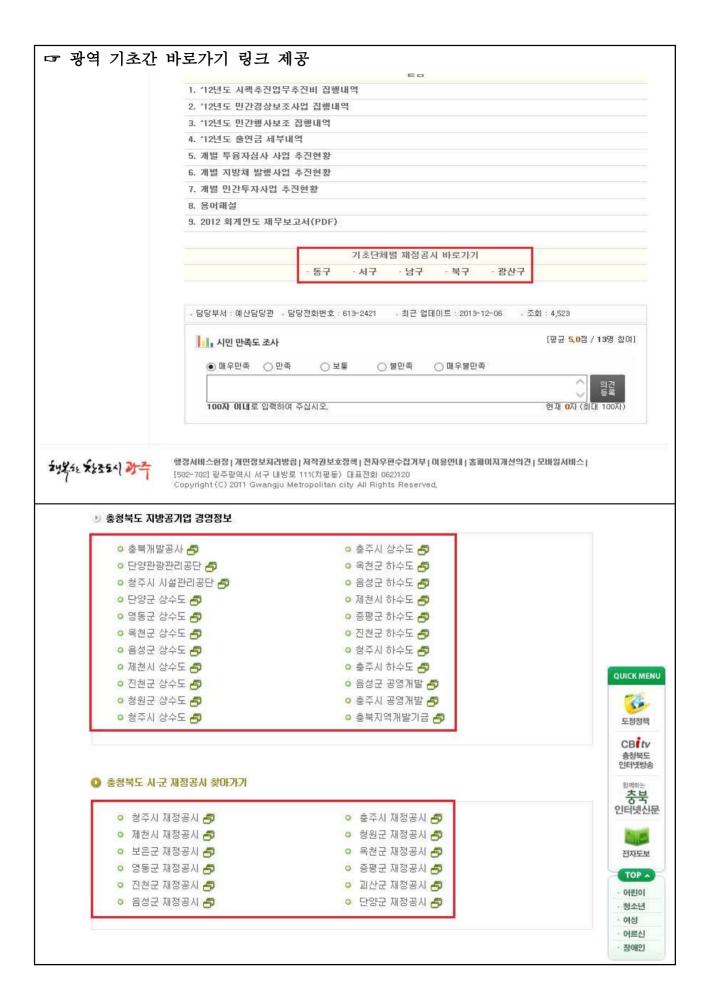
| • | 공시접근성 강화 | 161 |
|---|-------------|-----|
| • | 화면구성 및 표현방식 | 164 |
| • | 주민소통 활성화 | 166 |
| • | 통합공시 활성화 | 167 |
| • | 기타 우수사례 | 168 |

🚹 공시접근성 강화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링크, 재정공시 메뉴접근 단계 최소화(2단계 이하), 광역 기초간 재정공시 바로가기 링크 등 지역주민 및 수요자 접근성 강화
 - ▶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링크 제공 시 메뉴접근 3단계 이하 권장







② 화면구성 및 표현방식

■ 연도별, 공시기준 및 분류별로 화면을 구성하고, 홈페이지에서 재정공시 내용을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현하여 재정정보의 비교분석 및 전달성 제고

| 기준 및 분류별 | 로 화면 | 을 구 | <u>'</u> 성하 | 여 한 | 눈에 . | 보기 | 용이함 | | |
|--|--|--|---|--|--|---|--|--|--|
| 의견수렴 | | | | | | | | | |
| | | | | | Γ | 2015회 | 계연도 재정 | 공시 💙 검색 | |
| 60조이 규저에 이겨 저! | 년도 제저오 요 | 2.결기를 | 매녀 2욱 | 되었다. | 2히 시 : | 호베이지 | 를 통하여 곡 | ·시하네 나 | |
| | 116E6 | , 242 | - C Z Z | , 02 L | 231712 | 5-110171 | 2 8 9 9 8 | Marin. | |
| | 재정공시출 | 광 | | | | | ፟ 다유로 | · 미리보기 | |
| 1. 공통공시 총괄 | | | | | | | | 으드 미리보기 | |
| 2. 예산규모 | | | | | | | 호 다운로드 미리보기 | | |
| 3. 재정여건 | | | | | | | 호 다운로 | 으드 미리보기 | |
| 4. 재정운용계획 | | | | | | | 호 다운로 | 으드 미리보기 | |
| | | | | | | | | | |
| <u>난기준 재정공시</u> | | | | | | | | | |
| | 재정공시총 | 괄 | | | | | 호 다운5 | 모드 미리보기 | |
| 1. 공통공시 총괄 | | | | | | | 호 다운로드 미리보기 | | |
| 2. 살림규모 | | | | | | | 호 다운로드 미리보기 | | |
| 3. 재정여건 | | | | | | | 로드 미리보기 | | |
| 4. 채무 및 부채 | | | | | | | 호 다운로드 미리보기 | | |
| 5. 채권 | | | | | | | 호 다운5 | 로드 미리보기 | |
| 6. 행정운영경비 | | | | | | | 호 다운5 | 로드 미리보기 | |
| | | 2012 | 2011 | 2010 | 2009 | ∰ HOM | /E > 정부3,0 정 2007 | 보공개 > 예산 > 재정공시 | |
| | · 분 [| # | | | | 구 성 | 내용 | 用豆 | |
| 2015년 | 1 지방재정공시 | 전체 💷 | DOWNLOAD | | | | | | |
| 공공데이터 개방 총 팔 □ DOWNLOAD | | | | | | | | | |
| 경주요사업 공통공시 홍괄 및 DOWNLOAD 세입예산, 세 세입예산, 세 | | | | | | | | | |
| 메산규모 BOWNLOAD 중기지빙 | | | | | | | | | |
| 재정(I) F DOWNLOAD | | | | | | | | | |
| • 계전교 / | | | | | | | | | |
| 49 | | when the | | | | | | | |
| | | | | | | | | | |
| | 의견수렴 6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 1. 공통공시 총괄 2. 예산규모 3. 재정여건 4. 재정운용계획 1. 공통공시 총괄 2. 살림규모 3. 재정여건 4. 채무 및 부채 5. 채권 6. 행정운영경비 재정공사 2015 2016 | 의견수렴 5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재정운된 1. 공통공시 총괄 2. 예산규모 3. 재정여건 4. 재정운용계획 1. 공통공시 총괄 2. 살림규모 3. 재정여건 4. 채무 및 부채 5. 채권 6. 행정운영경비 지거정공시 교인15 2014 2013 교통공시 총괄 교통공시 총괄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5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재경운용결과를 매년 2월 1. 공통공시 총괄 2. 예산규모 3. 재정여건 4. 재정운용계획 1. 공통공시 총괄 2. 살림규모 3. 재정여건 4. 채무 및 부채 5. 채권 6. 행정운영경비 재정공시치 지정공시청관 2015 2014 2013 2012 2011 예산공시 결산공시 보류 2015년 지방재정공시 전체 및 COMPAGNE 홍 칼 및 DOMPAGNE 제정유용계획 및 DOMPAGNE 재정유용계획 및 DOMPAGNE | 의견수렴 5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재경운용결과를 매년 2월, 8월 연 1. 공통공시 총괄 2. 예산규모 3. 재정여건 4. 개정운용계획 1. 공통공시 총괄 2. 살림규모 3. 재정여건 4. 채무 및 부채 5. 채권 6. 행정운영경비 지정공시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예산공시 결산공시 교문공시 총괄 등 DOWNLOND 예산규모 등 DOWNLOND 제정운용계획 등 DOWNLOND 재정운용계획 등 DOWNLOND 재정운용계획 등 DOWNLOND 재정운용계획 등 DOWNLOND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2015회 5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제장운용결과를 매년 2월, 8월 연 2회 시 홍페이자: 1. 공통공시 총괄 2. 예산규모 3. 재정유시 4. 재정운용계획 1. 공통공시 총괄 2. 살림규모 3. 재정여건 4. 채무 및 부채 5. 채권 6. 행정운영경비 지정공시 교인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대정공시 경산공시 교문공시 총괄 교육에 대장유시 교원자리도, 제정자리도, 제정자리도로, 제정자리로로, 제정자리로로, 제정자리로로, 제정자리로로, 제정자리로로, 제정자리도로로, 제정자리로로, 제정자리로로로, 제정자리로로로, 제정자리로로로, 제정자리로로로, 제정자리로로로, 제정자리로로로, 제정자리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 2015회계면도 재청 2021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 2기준 재정공시 제성공시총관 호 다운로 1. 공동공시 총관 호 다운로 2. 예산규모 호 다운로 4. 재정운용계획 호 다운로 1. 공동공시 총관 호 다운로 2. 다운로 2. 학원규모 호 다운로 3. 재정여건 4. 채우 및 부채 호 다운로 5. 채권 6. 행정운영경비 호 다운로 2. 다운로 4. 채무 및 부채 호 다운로 5. 채권 6. 행정운영경비 호 다운로 2. 다운로 3. 재정여건 4. 채무 및 부채 호 다운로 5. 채권 6. 행정운영경비 호 다운로 2. 다운로 3. 재정여건 4. 채무 및 부채 호 다운로 5. 채권 6. 행정운영경비 호 다운로 대전공시 호 다운로 4. 해면 및 부채 호 다운로 6. 행정운영경비 호 다운로 제정유용경제 및 전에지용에 및 전에지용에 및 전에 및 | |



③ 주민소통 활성화

■ 공시내용에 관한 문의나 재정운용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통합민원게시판 등과 연계 구성



🐠 통합공시 활성화

■ 행자부 통합공시와 자치단체 공통공시간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수요자관점에서 양방향 접근이 용이하고, 이로 인해 통합공시 활용성 제고





■ 그 외 재정공시 표현 및 구성이 잘된 사례

▶ 주민관심이 높은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등을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구성

핸복영도하망의 발출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용 국가 영도대교 일원 빛연출 조형물 설치로 전국유일의 도개교인 영도대교 신개통에 따른 판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영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코자 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2013,11,24~2014,01,10(48일) / 1997년 / 7회
 사업내용: 빛 연출 조형물 설치(영도대교~남항시장 일원), 차 없는 거리공연 개최
 문영방식: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시행주체 / 수탁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영도문화원
 행사축제 유형(택1):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 ๑ 예사앤 및 진해앤

(단위 : 천원)

| 구 분 | 13년 | 12년 |
|-------|-------------------|--------|
| 예 산 액 | 70,000 (구비70,000) | 70,000 |
| 집 행 액 | 63,000 (구비63,000) | 70,000 |

-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 | 총원. | 가(비용) 🤅 | B) | | | 순원가 (자치단체 | | |
|-----|-----------------------|---------|----|-------------|------|-------------------------|---|--------|
| | 구 분 합계 지자체 수 100%* | | | 수탁기관 0%* | 사업수익 | (자시년제 순부담액) ⓒ=®-® | | |
| | 계 | 63,000 | - | 63,000 | Л | | | |
| | 인건비 | - | - | - | | 국비 | 0 | |
| | 행사직접비 | _ | _ | _ | 보조금 | 시도비 | 0 | |
| 운영비 | 대외홍보비 | - | - | - | | | | 63.000 |
| | 시설장비비 | 63,000 | - | 63,000 | | 사용료수익 | 0 | |

▶ 공시전문을 홈페이지에서 바로확인 가능하도록 웹페이지로 구성

부산광역시 재정공시 1470호 (*14, 8, 27)

부산광역시장(인)

우리 부산광역시 2013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급회수)는 10조 6,733억원으로, 전년대비 7,7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조 9,904억원이며,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9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3조 4,563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조 2,266억원입니다.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 부산광역시의 채무는 2조 8.656억원이며, 시민 1인당 지방채무는 812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은 13년도에 토지 및 건물 외 1,069,944건(9,043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및 건물 외 510,957건(3,043억원)을 매각하며, 현재는 총 21 조 4,83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를 동종자치단체(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8조 3,797억원) 보다 2조 2,936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업은 동종단체 평균액(5조 6,715억원)보다 3,189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9,115억원)보다 1조 5,448억원 많습 LICE
-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6,260억원)보다 1조 2,396억원 많고, 부산광역시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557천원)보다 255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25조 6,563억원)과 비교하며 4조 1,725억원이 적습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인 쇄 2015년 7월

발 행 2015년 7월

발 행 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협력과

Tel. 02) 2100-3680

Fax. 02) 2100-3470

인쇄처 부광 02) 2277-9002